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Ⅲ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

차 현 숙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Ⅲ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

Study 3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Focusing on Improv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

연구책임자 : 차현숙(연구위원)
Cha, Hyunsook

2017. 11. 15.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을 통하여 수행된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에서는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조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조례 입법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로 조례 제·개정시 활용하는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함
- ▶ 2017년에는 선행연구에 이어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활용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심사)기준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조례 입법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 조례 입법평가지 기준이 되는 (심사)기준표에 대한 정비 방향을 일본의 심사기준표와의 비교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의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를 정비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 분석**
 - 경기도 조례 심사기준표 분석
 - 사전 심사기준표 분석
 - 사후 심사기준표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심사기준표 분석
- 광주광역시 심사기준표 분석
- 부산광역시 심사기준표 분석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사기준표 분석

-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수행 현황 분석
- ▶ 조례 입안 실무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및 분석
-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 분석
- ▶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 조례 입법평가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심사기준표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심사기준표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함

- ▶ 주제어 : 입법평가, 조례 입법평가, 사전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In 2016, KLRI carried out legislative evaluation research project. ‘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was carried out as this project, which proposed ‘exemplary municipal ordinance(bill)’ that might be utilized by local governments that intended to legislate ‘ordinances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nd, as a study to support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ve manuals of municipal ordinances’ was carried out for local governments to utilize when enacting and amending ordinances.
- ▶ In 2017, following previous study,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which are utilized in implementing legislative evaluation and support smooth 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aterials that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s in improving the checklist that local governments are utilizing in the practice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by providing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checklist, which are the standard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with Japan’s checklist and the depth interview with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II. Major Content

- ▶ The Analysis of Current Checklist of local governments
 - The Analysis of Gyeonggi Province's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 ex-ante analysis of checklist
 - ex-post analysis of checklist
 - The Analysi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checklist
 - The Analysi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s checklist
 - The Analysis of Busan Metropolitan City's checklist
 - The Analysis of Busan Metropolitan City Geumjeong-gu's checklist

- ▶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s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 ▶ The Analysis of Depth Interview with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drawing up municipal ordinances

- ▶ The Analysis of Checklist of Local Governments of Japan

- ▶ The Proposal of Improv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III. Expected Effects

- ▶ By presenting the improvement of checklist actually utilized i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in the future, it will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s of improv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of the related local governments.
- ▶ By presenting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it will be helpful for the settlement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 **Key Words** : legislative evaluati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ex-ante legislative evaluati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legislative evaluation checklist of municipal ordinances

요약문	3
Abstract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I. 연구의 필요성	13
II.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I. 연구의 범위	15
II. 연구의 방법	16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7
I.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활용을 통한 자치입법 개선	17
II. 조례 입법평가 조례상 심사기준표 정비의 기초자료 제공	18
III.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18

제2장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심사기준표 분석 / 19

제1절 현행 조례 입법평가 조례 도입 현황	21
제2절 개별 심사기준표 분석	24
I.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분석지표 분석	25
II.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지표분석	34
III.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기준표 분석	37
IV.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의 기준표 분석	40
V.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기준표 분석	45
VI.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 교차 분석	47
VII. 소 결	55

제3장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및 분석 / 57

I. 2013년까지의 일본 조례 평가 개관	59
II. 2013년 이후의 일본 조례평가 관련 현황	61
III. 소 결	78

제4장 전문가 조사 및 분석 / 79

제1절 질문지 구성을 위한 사전 인터뷰	81
I. 사전 인터뷰 배경	81
II. 사전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문지 구성	81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및 분석	85
I. 전문가 조사 개요	85
II. 분 석	87
III.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97

제5장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 / 99

I. 연구 요약	101
II.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안(사후적 입법평가)	102
참고문헌	109
참고자료	113
• 일본 자치기본조례 일람	115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 연구의 필요성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는 2015년부터 중점과제로 진행되어온 연구이다. 1차년도 연구는 2015년에는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와 조례 입안 관련 조례가 있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분석하고 실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조례 입법평가 모범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¹⁾ 2016년에는 조례 입법평가의 지원을 제·개정 조례 입안시 참고하는 자료인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조례 입법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계속과제의 목표라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17년에는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조례 입법평가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심사기준표(분석지표, 기준표 등등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동일하지 아니하나 이 연구에서는 심사기준표로 사용하기로 한다)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동시에 실제 조례 입법평가를 수행하고 있

1) 차현숙 외 4인,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한국법제연구원, 2015

는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사기준표를 정비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실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실무담당자들의 경우 관련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심사기준표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²⁾ 즉 심사기준표의 정비는 조례 입법평가의 제도화 확산에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조례 입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심사기준표에 대한 정비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II.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 지원을 위한 연구로서, 현재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이며, 조례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심사기준표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심사기준표가 보다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 수행시에 심사기준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현재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15개 중 광역지방자치단체 4곳(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자치단체 1곳(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조례 입법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심사기준표를 대상으로 한 분석 및 광역자치단체 4곳(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제 조례 입법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조례 입법평가에 참여한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정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담당 실무전문가 대상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받은 의견임(전화인터뷰 일자 2017. 6. 20)

조례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시행되면서 쌓인 경험을 공유하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조례 입법평가가 지속되어 조례의 입안에 관련하여 의미있는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표의 실효성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심사기준표를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대상인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심사기준표를 상호간의 구성 및 세부항목에 대한 비교·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심사기준표는 현재 조례 입법평가의 실무에 있어서 실무처리의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무상의 효용성을 높이고 조례 입법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로 심사기준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례 입법평가를 실제로 시행하기 전에 작성된 심사기준표는 조례 입법평가 시행을 통하여 그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조례 입법평가를 준비하고 담당하는 실무전문가들이 심사기준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³⁾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정비를 위하여 우선,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15개⁴⁾ 중에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3)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지방자치단체 2개의 조례 입법평가 담당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한 의견이다(전화인터뷰 일자 2017. 6. 20.).

4) 2017년10월말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북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심사기준표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조례 입법평가의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 확보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무 담당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첫걸음을 뚫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사기준표가 보다 완결성을 갖도록 수정·보완함으로써 현재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향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가 보다 원활하게 정착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나아가 이 기준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참고자료가 되었던 것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평가 기준표이다. 따라서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정비라는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심사기준표 작성 시 참고하였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심사기준표에 대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평가관련 기준표와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정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론을 적용한다.

II.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현재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14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관련 심사기준표를 모두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

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산시, 익산시, 제천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준표는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심사기준표 작성시 참고하였던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평가 기준표의 최근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한다.

또한 조례에 별표 등으로 포함되어 있는 심사기준표의 작성 배경 및 심사기준표가 실제 조례 입법평가지 활용되는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심사기준표의 정비를 위하여 조사된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여 조례 입법평가지 실무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사기준표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크게 입법적 측면과 실효성 측면의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활용을 통한 자치입법 개선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조례 입법평가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조례 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정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갖는 조례의 필요성, 효과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조례의 대 주민 수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조례의 입법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시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자체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정제된 심사기준표를 조례 입법시 활용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를 통한 자

치입법의 정비가 수월해짐과 동시에 자치입법의 순방향으로의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 조례 입법평가 조례상 심사기준표 정비의 기초자료 제공

조례 입법평가지 활용하고 있는 조례상의 심사기준표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조례 입법평가 조례 및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그 조례의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새롭게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Ⅲ.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에 있어서 실제 조례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실무전문가들이 조례 입법평가지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심사기준표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 좋은 제도를 도입하였더라도 그 실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제도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조례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었지만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를 이를 도입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익히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는 초기단계로서 일정부분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현재의 조례 입법평가 경험 및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한 비교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정비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장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심사기준표 분석

제1절 **현행** 조례 입법평가 조례 도입 현황

제2절 **개별** 심사기준표 분석

제2장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심사기준표 분석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5개이다. 이 중에서 조례에서 조례 입법평가를 활용하는 심사기준표 또는 분석지표를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4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별도의 심사기준표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의 현황을 살펴보고 질을 바꾸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여 제시한다.

제1절 현행 조례 입법평가 조례 도입 현황

2017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5개이다.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도입시기, 도입한 조례 입법평가의 형태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 등의 운영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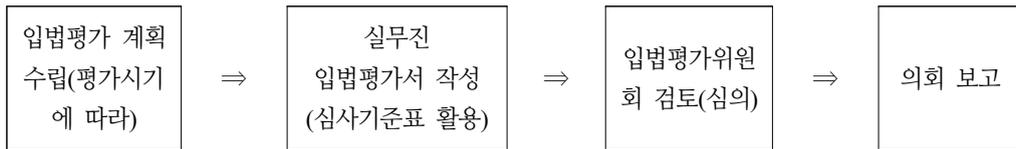
연 번	지방자치 단체명	조례명	도입 시기	도입한 조례 입법평가 유형	평가 주기	비 고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13.7.1	사후 입법평가	2년	시행규칙 운영 중
2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17.2.6.	사후 입법평가	2년	시행규칙 미 제정
3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2017.7.10.	사후 입법평가	3년	시행규칙 미 제정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13.11.11.	사후 입법평가	3년	시행규칙 미 제정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10.30.	사후 입법평가	3년	시행규칙 운영 중
6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7.8.	사후 입법평가	3년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운영
7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4.9.	사후 입법평가	3년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운영
8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2016.6.1.	사후 입법평가	2년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운영
9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3.13.	사후 입법평가	3년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운영
1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4.11.5. (제정) 2015.1.1. (일부개정)	사후 입법평가	3년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
11	아산시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9.15.	사후 입법평가	3년	시행규칙 미 제정

연 번	지방자치 단체명	조례명	도입 시기	도입한 조례 입법평가 유형	평가 주기	비 고
12	익산시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2.27.	사후 입법평가	4년	시행규칙 미 제정
13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2015.8.18. (제정) 2016.12.30. (일부개정)	사후 입법평가	4년	시행규칙 미 제정
14	제천시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2015.8.13.	사후 입법평가	3년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
15	경기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2014.1.10.	사전 입법영향 분석	제정 전, 전부 개정 전	의회규칙으로 운영
				사후 입법영향 분석	2016.12. 기준 4년	

조례 입법평가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15곳이다. 이 중에서 4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나머지 11곳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사전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한 곳이고 나머지 14곳은 사후 입법평가만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후 입법평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조례명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경우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1곳은 조례에서 직접적으로 사후 입법평가만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조항에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평가시기를 시행일로부터 2년~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 입법평가에 국한하여 운영한다고 분류할 수 있다. 2017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1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적으로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조례 입법평가는 통상적으로 실무부서(지방자치단체 집행부 또는 의회 입법지원 조직)에서 심사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입법평가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입법평가서를 입법평가위원회 등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2: 조례 사후 입법평가의 운영 방식>



입법평가 계획의 수립에 따라 실무진이 입법평가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입법평가서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평가 절차를 시장(또는 구청장)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경우 입법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시장(또는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입법평가가 입법자의 입법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의회를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제2절 개별 심사기준표 분석

조례 입법평가를 제도화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 15곳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4곳(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의 기간 동안 실제 사후적으로 조례 입법평가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례 입법평가는 심사기준표를 기반으로 하여 입법평가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입법평가서를 입법평가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로 사후 입법평가가 진행된다. 따라서 실제 조례 입법평가의 수행과 관련하여 조례 입법평가를 담당할 실무전문가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 심사기준표라고 할 것이다. 조례 자체에서 심사기준표를 두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경기도, 광주광역시(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시행규칙)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행한 조례 입법평가서를 기반으로 심사기준표를 도출하였다. 아래에서는 먼저 심사기준표를 운영하고 있는 5곳의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를 각각 분석하고, 다음으로 심사기준표 간의 교차분석을 통하여 심사기준표 정비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1.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분석지표 분석

1. 분석지표 내용 분석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별표로 사전 입법영향분석⁵⁾지표와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라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사후 입법영향분석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3조에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발의 하여 제출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조례 제정전 또는 전부개정 전에 실시한다. 제정조례와 전부개정조례를 대상으로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

5)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경기도의 경우 입법평가와 동일한 제도를 “입법영향분석”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의원발의를 통해서 의회 내의 자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것에서 기인하는 용어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부득이 경기도에 한해서는 “입법평가”가 아니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법영향분석”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3조제3항).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5조제1항).

먼저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에서는 입법영향분석 항목으로 입법의 필요성, 적법성/중복성, 비용/의견수렴을 대항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항목으로 먼저 입법의 필요성 분석항목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적법성/중복성 항목에서는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 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 중복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용/의견수렴 항목에서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는가, 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 조례 제정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조례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반대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3조에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발의하여 제출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조례 제정 전 또는 전부개정 전에 실시한다. 제정조례와 전부개정조례를 대상으로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3조제3항).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5조제

1항). 세부적인 항목과 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3: 경기도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1.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2. 적법성 / 중복성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③ 해당없음
3. 비용 / 의견수렴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제정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반대의견을 충분 히 검토하였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지표 별표 1.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의 조례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는 3개의 대항목에 1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최초에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시행 후 2016년 12월 중에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최초 사후 입법영향분석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중에 시행하도록 이 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 전에는 10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규정하여 제도화한 것은 전문위원들이 조례 입안시에 한번 더 숙의하여 조례의 필요성과 중복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둠으로써 불필요한 조례의 양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는 업무담당자가 사전에 조금 더 숙의 할 수 있도록 대항목과 세부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시간을 들여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불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제정 이후 개정까지 조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추가하여 검토할 수 있는 항목들로는 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다.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가 과연 필요한가? 기존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한가? 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 위임·위탁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지에 대한 검토도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는 이 조례 별표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4: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2. 유효성 및 효율성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입법당시 기획하였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3. 법적합성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성별영향)/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등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4. 조례의 기여도	조례시행으로 도민의 후생복리의 개선에 영향을 미쳤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7)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지표 별표 2.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5. 조례와 도민의 관계	조례 혹은 조례의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긍정 적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여 도민들이 조례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도민들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6. 조례의 필요성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는 입법목적의 실현성, 유효성 및 효율성, 법적합성, 조례의 기여도, 조례와 도민의 관계, 조례의 필요성의 6개 대항목을 두고, 세부항목을 위의 표와 같이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유효성 및 효율성과 관련하여 세부항목으로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입법당시 기획하였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비용과 편익은 항상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비용 투입에 따른 편익이 항상 계산 가능한 것도 아니다. 특히 입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례 입법에 있어서

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입법당시 기획하였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척도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을 기준으로 이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세부항목을 물을 수 있는 분야의 조례인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를 살펴 본바, 세부항목의 내용별 조정이 필요하다. 배치되는 내용을 하나의 세부항목에 담고 있는 경우들이 발견되는 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자면, 법적합성 항목의 세부항목의 하나인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가”와 관련해서 “조례 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는가”에 대한 체크와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가”는 다른 질문이다. 또한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가”의 세부항목 후단의 내용은 모든 조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기도 하지만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이 없다고 하여 그 조례의 시행이 언제나 “무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같은 선상에서 법적합성 항목의 두 번째 세부항목인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경우 법적합성 대항목의 첫 번째 세부항목과 연계하여 볼 때 세부항목의 순서가 변경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논리구조를 갖추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조례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게 한 다음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논리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된다.

조례와 도민의 관계 항목에서 “조례 혹은 조례의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인가”, “조례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여 도민들이 조례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가”의 항목에 대해서는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를 바로 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항목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척도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이 된 조례에 대하여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입법영향분석 수행자의 개인 의견을 들어 이 항목의 분석지표를 체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세부항목의 경우 조례 시행 “자체”에 대한 민원 제기 여부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관련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인지 세부항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세부항목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필요성 항목에서는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묻고 있다. 이 항목은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의 전체를 아우르는 세부항목이라고 할 것이다.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결정된다면, 나머지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가 의문이다.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2. 분석지표 형식 분석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서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분석척도를 제시하여 체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영향분석척도는 세부항목의 해당여부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대항목인 입법의 필요성 부분을 예로 들어 본다.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1.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세부항목별과 입법영향분석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입법영향분석척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① 그렇다/② 그렇지 않다”로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항목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입법(실무)자가 자체적으로 조례입법의 필요성을 숙의한다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시행 취지에 비추어볼 때 실무자가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형식적 외관을 갖추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입법영향분석척도에서 “① 그렇다/② 그렇지 않다”로 체크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이유로 이 항목을 체크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서술할 수 있는 란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유를 부기하도록 함으로써 체크항목에 대하여 한번 더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지표의 형식을 정비하는 경우 이러한 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의 경우 세부항목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매우 그렇다/② 그렇다/③ 보통이다/④ 그렇지않다/⑤ 전혀 그렇지않다”의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체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대항목인 “입법목적의 실현성”을 예로 들어 본다.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1. 입법목적의 실현성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위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이 되는 조례가 입법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조례 입법 당시의 의도대로 수행되었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체크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조례 입법 당시의 입법목적의 의도대로 수행된 경우를 예정하여 살펴본다면 항목 중에서 “① 매우 그렇다/② 그렇다”가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지표에 따라 양자를

입법영향분석담당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체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여 양자를 구분하여 체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목별 구분에 따른 사후적 조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도 큰 의미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③ 보통이다”의 선택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 분석지표에서 세부항목과의 연계에서 “보통”이 갖는 의미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조례 입법당시의 입법목적의 수행이 “보통”인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여야 하는가? 혹은 유지하여야 하는가?의 질문에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입법영향분석척도의 선택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상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왜 개별 세부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한 사람이 그 항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부기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가능한 구조로 형식적 틀을 변경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하나의 세부항목에서는 하나의 질문만을 제시하도록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세부항목은 하나인데 그 내용은 두 개를 담고 있는 경우 입법영향분석척도에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세부항목에서는 하나의 내용만을 담을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Ⅱ.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지표분석

1. 기준표의 내용 분석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제5조에서 평가 기준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후 입법평가의 기준을 동조 각 호에서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로

규정하고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는 대항목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계획 수립, 비용과 편익의 적정성, 예산 편성 및 집행, 법적 정합성, 위원회 구성을 들고 있다. 입법목적의 실현성 항목에 대하여 세부항목으로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를, 비용과 편익의 적정성 항목에 대하여 비용에 따른 편익 발생은 적절한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발생은 있는가를, 예산편성 및 집행 항목에 대하여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를, 법적 정합성 항목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개별 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있는가를, 위원회 구성 항목에 대하여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서 적절한가, 위원회의 성비는 적절한가를 세부항목으로 규정하여 입법 평가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항목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에 따른 세부항목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5: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구 분	세 부 항 목	문제점	개선안
입 법 목적의 실현성	·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계 획 수 립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비용과 편익의 적정성	· 비용에 따른 편익 발생은 적절한가?		
	·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발생은 있는가?		

구 분	세 부 항 목	문제점	개선안
예 산 편성 및 집 행	·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법 적 정합성	· 상위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개별 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있는가?		
위원회 구 성	·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서 적절한가?		
	· 위원회의 성비는 적절한가?		

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7개 대항목에 대하여 총 9개의 세부항목을 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부항목은 조례의 사후적인 입법효과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세부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기준표의 형식 분석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및 동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는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입법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 6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각각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도록 하는 양식을 차용하고 있다. 하나의 대항목을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항 목	문제점	개선안
입 법 목적의 실현성	·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1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술하고 개선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현재의 지표에서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바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부족하다. 1차적인 선택과 2차적인 기술이 가능하도록 지표의 형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Ⅲ.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기준표 분석

1. 기준표의 내용 분석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서는 별도로 심사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사후 입법평가만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입법목적 실현성 등의 5개 대항목에 대하여 13개 세부항목을 두어 사후 입법평가를 시행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6: 부산광역시 입법평가표⁸⁾>

구 분	세부항목	평가척도	현실태 및 문제점	검토의견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조례의 제정 이후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개별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	① 예 ② 아니오		

8) 부산광역시의 경우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서 별도의 입법평가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2016년 시행된 실제 입법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입법평가표를 재구성하였음

구 분	세부항목	평가척도	현실태 및 문제점	검토의견
	조례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수립된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이 적절한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입법목적 실현성 등	조례가 입법목적 및 제·개정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조례가 시행된 후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항목의 세부항목인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개별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의 경우 두 가지 확인사항을 하나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이 있는지와 조례 내에서 개별 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다른 경우 세부항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입법목적 실현성 등 항목의 세부항목은 “조례가 입법목적 및 제·개정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 “조례가 시행된 후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및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이다. 이 세 가지 세부항목은 하나의 대항목으로 묶기에는 범주가 다르다. 즉 “조례가 입법목적 및 제·개정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는 입법목적 실현성이라는 대항목에 적합한 세부항목이나 나머지 두 개의 세부항목 규정은 입법목적 실현성 보다는 주민 관련성 등으로 분류하여야 적합한 항목으로 보인다. 대항목과 세부항목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2. 기준표의 형식 분석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를 시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입법평가표는 그 형식에 있어서 현재 조례 입법평가지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표(심사표)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구 분	세부항목	평가척도	현실태 및 문제점	검토의견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조례의 제정 이후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는가?	① 예 ② 아니오		

구 분	세부항목	평가척도	현실태 및 문제점	검토의견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개별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조례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평가표는 척도를 통한 1차 판단과 문제점 및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2차 판단이 가능하도록 형식적인 면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활용되는 심사표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IV.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의 기준표 분석

1. 기준표의 내용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서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조례와 동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 사후 입법평가는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바 이때 이 조례 별표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기반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상의 분석지표는 입법의 필요성, 조례의 유효성, 조례의 효율성, 조례의 공평성, 조례와 도민의 관계, 조례의 유지 필요성, 조례의 적법성, 제주현실부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의 9개 대항목을 두고 30개의 세부항목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7: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 분석지표9>

입법영향분석 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사 유
1. 입법의 필요성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위임된 조례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이 있는가(자치사무인지 여부 검토)?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현시점에도 적절한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가 현시점에서도 존재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유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내용이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알기 쉬운 자치법규인지 평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의 효율성	조례 시행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확보 및 시행에 문제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9)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별표 1.

입법영향분석 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사 유
4. 조례의 공평성	조례 시행으로 남녀/장애인 등을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와 도민의 관계	조례 혹은 조례의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여 도민들이 조례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도민들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6. 조례의 유지 필요성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7. 조례의 적법성	상위법령의 위임근거(인용)가 명확한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분석 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사 유
	주민·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이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8. 제주현실 부합성	제주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9.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제위원회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위원회가 연간 평균 4회 이상 개최 되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의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대항목 1은 입법의 필요성 항목이다. 이에 대하여 세부항목인 분석척도를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의

6단계 척도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의 필요성 항목의 주요 내용들은 위임조례 여부 등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렇다, 아니다 정도의 척도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명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대항목에 따른 세부항목이 이와 동일한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보통이다”의 분석척도를 선택하는 경우 추후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요하게 되어 지표를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및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구분도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료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례와 도민의 관계 대항목과 관련하여서는 대항목의 제목인 “조례와 도민의 관계”와 세부항목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조례 제·개정 과정의 적절성” 혹은 “자치입법 과정의 적절성”등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세부항목 중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이 있는가”와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는 없었는가”의 항목은 유효성 대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준표의 형식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별표는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표의 제목은 “입법평가”가 아닌 “입법영향분석”을 사용하고 있어서 용어사용의 혼선이 있다. 조례 정비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 조례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실무전문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크하도록 분석지표의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도입 가능할 것이다.

V.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기준표 분석

1. 기준표의 내용 분석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서 조례 입법평가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이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8: 부산광역시 금정구 입법평가기준표¹⁰⁾>

연 번	구 분	세 부 항 목	문 제 점	개 선 안
1	입 법 목적의 실현성	· 조례 제정· 개정의 취지와 입 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2	계 획 수립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3	예 산 편성 및 집행	·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4	법 적 적합성	· 상위 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5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은 적절한가?		
		· 위원회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6	그 밖의 이행사항	· 그 밖에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가?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대항목으로 6개를 두고 있다. 입법 목적의 실현성, 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법적 적합성, 위원회 구성, 그 밖의 이행사항이 그것이다. 각 대항목에 대하여 세부항목을 두고 있는데, 여섯 번째 대항목은 “그 밖의 이행사항”의 세부항목인 “그 밖에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가”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항목과 세부항목은 광주광역시의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와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준표의 형식 분석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심사기준표는 형식적으로는 대항목과 세부항목 및 문제점과 개선안을 적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아래의 예시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그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광주광역시의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 번	구 분	세 부 항 목	문 제 점	개 선 안
1	입 법 목적의 실현성	·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광주광역시의 심사기준표 형식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1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술하고 개선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현재의 지표에서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바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1차적인 선택과 2차적인 기술이 가능하도록 지표의 형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VI.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기준표 교차 분석

조례 입법평가지 활용하는 심사기준표를 대상으로 심사기준표의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과 심사기준표의 형식적 측면을 나누어 분석한다. 조례를 대상으로 한 사후 입법평가 수행시 심사기준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례 입법평가를 실제 준비하는 실무전문가들은 심사기준표를 기반으로 하여 입법평가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화되어 있는 조례 입법평가에 있어서 심사기준표의 정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실무담당자가 활용하기 좋고 내용적으로도 완결성을 갖는 심사기준표로의 정비는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가 제도적 자리매김을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¹¹⁾를 내용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형식에 대하여 보완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

1. 심사기준표 항목 분석

(1) 대항목 기준 비교·분석

심사기준표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상의 대항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9: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대항목 비교>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입법목적의 실현성	입법목적의 실현성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입법의 필요성	입법목적의 실현성
유효성 및 효율성	계획수립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조례의 유효성	계획수립

11) 사전 입법평가의 경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 한 곳이라 지방자치단체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문가 의견 수립 등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고 별도로 정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법적합성	비용과 편익의 적정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조례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조례의 기여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공정성	법적 적합성
조례와 도민의 관계	법적 정합성	입법목적 실현성 등	조례와 도민의 관계	위원회 구성
조례의 필요성	위원회 구성		조례의 유지 필요성	그 밖의 이행사항
			조례의 적법성	
			제주현실 부합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항목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항목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항목을 비교·분석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대항목별 비교·분석

1) 입법목적 실현성

입법목적의 실현성에 대해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공통으로 대항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0: 입법목적 실현성 항목의 지방자치단체별 세부항목 비교>

입법목적 실현성	경기도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 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가?
	광주광역시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부산광역시	조례가 입법목적 및 제·개정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
		조례가 시행된 후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
금정구	조례 제정·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입법목적의 실현성”은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라는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목적조항에서 밝히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서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입법목적 실현성 항목에 세부항목으로 두고 있는 “조례가 시행된 후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와 “조례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있는가?”는 해당 지역의 모든 조례의 입법목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다. 두 개의 세부 항목은 다른 지역에서 통상 “조례의 기여도” 또는 “조례의 공정성” 항목에서 두고 있는 세부항목이므로 대항목을 새롭게 설정하여 이동하여 배치하는 방식으로의 정비를 검토할 수 있다.

2) 유효성 및 효율성/ 비용·편익/예산

“유효성 및 효율성” 항목의 경우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다섯 곳 모두 관련 사항을 두고 있다. 대항목의 명칭은 약간씩 달랐지만 “예산, 비용”의 측면을 고려한 심사기준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조례의 사후 입법 평가에서 예산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 확인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1: 유효성 및 효율성 항목의 지방자치단체별 세부항목 비교>

유효성 및 효율성	경기도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편익은 입법당시 기획하였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광주광역시	비용에 따른 편익 발생은 적절한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의 발생은 있는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부산광역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가?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제주특별 자치도	조례 시행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확보 및 시행에 문제가 있는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조례의 내용이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알기 쉬운 자치법규인지 평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유효성 및 효율성 항목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각각 두 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활용하고 있는데, 효율성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동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와 “조례의 내용이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알기 쉬운 자치법규인지 평가)”는 심사기준표를 활용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부항목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며 “법적합성” 혹은 “법적 정합성” 항목으로 이동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법적합성, 법적 정합성, 조례의 적법성

“법적합성” 혹은 “법적 정합성”, “조례의 적법성” 항목은 조례 제·개정 의 직접적인 근거와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서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해보아야 할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모두 이에 관한 세부항목을 두고 있다. 각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12: 법적합성 항목의 지방자치단체별 세부항목 비교>

법적합성	경기도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해당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는가?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광주광역시	상위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개별 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있는가?
	부산광역시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조례의 제정 이후 같은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는가?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개별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
		조례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가?

제주특별 자치도	상위법령의 위임근거(인용)가 명확한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가?
	주민·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조례 제·개정 이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었는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통상적인 입법체계에 따를 때, 특히 위임조례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조례의 유지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으로 적합한 항목이라고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법적합성 항목의 세부항목의 하나인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가”와 관련해서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령에 배치되는가”에 대한 체크와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가”는 다른 질문이다. 또한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가”의 세부항목 후단의 내용은 모든 조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기도 하지만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이 없다고 하여 그 조례의 시행이 언제나 “무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항목간 조정을 통하여 심사기준표 활용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조례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게 한 다음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논리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세부항목인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개별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의 경우 두 가지 확인사항을 하나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이나 대립이 있는지와 조례 내에서 개별 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

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다른 경우 세부항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례의 적법성 항목 이외에 “입법의 필요성” 대항목에서 유사한 세부항목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위임된 조례인가?”,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이 있는가(자치사무인지 여부 검토)?”,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현시점에도 적절한가?”,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가 현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는가?”가 그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례 제정의 근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근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인 법률의 위임으로 함께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항목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나머지 항목의 경우 조례의 적법성 항목과 항목간 검토를 통하여 유사한 항목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위원회 구성/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관하여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다.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13: 위원회 항목의 지방자치단체별 세부항목 비교>

위원회	광주광역시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서 적절한가?
		위원회의 성비는 적정한가?
	부산광역시	위원회 구성이 적절한가?
		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있는가?
	제주특별 자치도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위원회가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위원회인가?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가?
		위원회가 연간 평균 4회 이상 개최 되었는가?
		해당 위원회의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가?

	금정구	위원회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밖에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수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물론이고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도 많다.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위원 위촉 등 현실적인 문제로 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쉽지 아니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위원회의 통합, 폐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집행력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심사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항목으로 “위원회가 연간 평균 4회 이상 개최되었는가”를 두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따라서 연 2회 운영으로 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영의 직접적인 횟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위원회의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를 세부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법정 위원회로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법정 위원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심사기준표 형식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심사기준표의 형식과 관련하여 세부항목에 대하여 1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술하고 개선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대부분 현재의 심사기준표에서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바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부족하다. 1차적인 선택과 2차적인 기술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표의 형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세부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를 수행한 사람이 그 항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부기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가능한 구조

로 형식적 틀을 변경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하나의 세부항목에서는 하나의 질문만을 제시하도록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세부항목은 하나인데 그 내용은 두 개를 담고 있는 경우 심사기준표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세부항목에서는 하나의 내용만을 담을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형식적인 면에서 조례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실무전문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크하도록 분석지표의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방식을 차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평가항목	세부항목	분석 및 평가	문제점 및 의견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VII. 소 결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대하여 그 내용과 형식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 입법평가의 수행여부, 입법평가 실무담당이 의회인지 집행부인지 여부, 자체평가로만 진행되는지 연구용역 등 외부자원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평가기준표의 활용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표는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를 보다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가 주민을 위한 더 좋은 조례의 정비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분석지

표를 실제 활용하는 전문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입법평가가 제도화 이후 정착하는데 있어서 일정정도의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평가를 담당할 실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평가기준표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정비는 물론이고 그 형식에 대한 정비도 함께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래에서는 장을 바꾸어 일본의 조례 평가에 대하여 2013년도 연구원에서 수행한 선행 연구 이후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장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 및 분석

제3장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 및 분석

I. 2013년까지의 일본 조례 평가 개관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2013년도에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조례안 도입을 위하여 일본의 조례 평가 현황과 평가기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한 바, 일본에서 조례 평가와 관련하여 기준의 내용으로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¹²⁾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그 평가에 있어서는 주민표의 평등취급 등의 ‘공평성’은 불가결한 기준으로 생각되고,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적법성’도 필수조건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의 경우는 주민의 참가나 NPO 등과의 협동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례평가의 일반적 기준으로는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공평성, 협동성, 적법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1) 필요성

필요성이란 해결하려는 과제에 대조하여 애초에 해당조례의 제정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정하는 기준이다. 조례시행에는 통상비용이 요구되므로, 만약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도 사인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지자체가 관여할 필요는 없고, 요강이나 예산사업 등 조례 이외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도 충분하다. 특히, 규제조례는 사권의 제한을 수반하므로 그 필요성을 보다 진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유효성

유효성이란 해당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해 어디까지 기여하는가, 문제의 해결에 어디까지 효과를 발휘되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조례의 ‘목적’이 설정되면 다음 조례의 ‘수단’

12) 차현숙·최혜선,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2013, 한국법제연구원, 56면~64면.

이 문제로 되지만, 수단에 관해서는 우선, 그것이 목적의 실현에 어디까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를 묻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대상의 범위, 수단의 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의 내용 등이 문제가 된다.

(3) 효율성

효율성은 해당 조례의 집행에 따라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한 수단은 없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목적 실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시행을 위한 인건비, 급부비 등의 비용이 방대하다면 우수한 조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여기에서의 비용에는 조례운용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내부적 비용과 주민 등의 조례의 대상자나 사회전체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비용이 있다. 내부적 비용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직원의 인건비, 보조금 등의 사업비, 사무비 등이 있다.

효율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과 비교한다면 정량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4) 공평성

공평성은 해당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조례에 의한 효과나 비용이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평등하게 취급되고 있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조례는 공공의 물이므로 단순히 목적을 실현하면 되는 것이 아닌 그 수단이 주민이나 사업자에 있어 공평할 것, 즉 합리성이 없는 불평등한 취급이 없어야 한다. 이것도 주로 조례의 ‘수단’에 관한 기준이라고 한다.

(5) 협동성

협동성은 조례의 구조에서 주민이나 NPO 등의 참가와 협력을 어디까지 편입하고 존중하고 있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조례가 지역사회의 틀인 이상, 그 구조에서 주민과 NPO의 의견을 반영시키거나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의 실정을 꼼꼼히 반영할 수 있고, 주민과의 사이에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6) 적법성

적법성이란 해당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위법이 되지는 않는가, 법률이나 다른 조례와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조례의 내용이 우수하여도 위법한 것이면 효력이 없으므로 조례의 최저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례의 목적과 수단을 포함한 전체적인 평가이며, 기본적으로는 적법한가 위법한가의 양자택일형의 평가가 된다.

2013년도 연구 내용의 간략한 개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례 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은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공평성, 협동성, 적법성에 근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후

에서는 2013년 이후 일본에서 조례 평가와 관련하여 보다 발전된 상황변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II. 2013년 이후의 일본 조례평가 관련 현황

2017년 10월 기준, 일본에서는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369건 중에서 조례의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45개의 시·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재검토기간의 설정, 재검토를 실시하는 세부적인 조직 규정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된 지침도 다수 발견된다.¹³⁾

2012년까지의 개정 결과는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4: 2012년까지의 자치기본조례 개정 경과>

	폐지를 검토하는 조례 < a >	개정을 검토하는 조례 < b >	폐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조례	총 계 < c >	폐지, 개정을 검토하는 조례의 비율 < (a + b) / c >
개정의 결과	13	67	240	320	25.0%
개정규정이 있음	(7)	(31)	(42)	(80)	(47.5%)
개정규정이 없음	(6)	(36)	(198)	(240)	(17.5%)

* 통상 재검토 규정은 5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2017년 통계는 2018년에 집계될 것으로 보임

일본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지침 또는 재검토 지침 등의 명명 하에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3) NPO법인 공공정책연구소, 제공내용. <http://koukyou-seisaku.com/policy3.html> (2017.11.1. 검색)

1. 구마모토현¹⁴⁾의 조례 재검토 관련 현황

구마모토현의 경우 조례 검토 절차에 현민(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의 전개를 위해서 현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의 검토 과정에서 정보공개, 현민참여시스템을 도입하고, 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점수가 검토회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정된 조례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회 정세의 변화, 법령의 개정 등을 토대로 하여 그 실시상황을 조사하고, 제정의 원인이 된 입법 사실에 변경이 아닌지, 역할이 이미 완료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에 응하여 개폐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정비하고 이를 위하여 조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는 구마모토 현의 조례 재검토 관련 세부 사항을 소개한 것이다.

(1) 현의 조례 관련 상황

평성 12년 4월에 시행된 지방분권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관위임사무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제정권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평성 23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령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의 의무, 첨부의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양이 열린 것으로서,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제정권은 더 확대되었다. 현은 법령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나 정책의 실현수단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분권의 진전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확대에 앞으로는 지역의 특성 및 현민의 요구 등을 근거로 하여 스스로의 판단 및 책임에서 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뒤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의 실현에 임할 필요가 있다.

(2) 현의 조례 등의 현황 및 과제

구마모토현 독자의 정책적인 조례 제정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현에서는 평성 25년 4월 1일 현재 410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른바, 추가, 삭제조례, 법령의 공백

14) 구마모토 현에서는 어떤 사항을 조례, 규칙 또는 요강에 규정해야 하는지의 기준이나 조례 등을 제정, 운용 및 점검하는 데 기본적인 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대응 등을 정하고 있음. 熊本県における条例等の制定指針, http://www.pref.kumamoto.jp/kiji_4910.html (2017. 10. 30. 검색)

영역을 대상으로 한 조례 및 본 현 독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례는 58건(전체의 약 14%)이다.

지역의 특성 및 현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주체적이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실현 수단의 하나로 본현 독자의 정책적 조례제정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요강 등이 정책실현 수단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본 현에서는 평생 25년 4월 하루 현재 1,661건의 요강 등을 제정하고 정책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운용하고 있지만 본래는 조례에 의해야 할 규제적인 행정분야에 관해서도, 현민의 협력에 입각한다는 생각 아래, 요강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요강을 근거로 하는 규제적 행정에 대해서는 지도요강의 문구 및 운용실태에서 임의로 있어야 할 행정지도의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된 판례도 있고 지도 요강에 대해서는 조례화를 포함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민의 조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불충분하다. 요강 등은 조례 및 규칙과 달리 현 공보 및 현의 예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않는 것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현민의 정보 제공이 불충분한 상황이고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조례 등의 제정지침의 책정 필요성 및 목적

지방분권이 진전되면서 지역의 특성 및 현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현으로 설명책임을 완수하면서 주체적이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거기에 근거하는 요강 등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 조례를 기본으로서 필요한 규칙 및 요강 등을 정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는 현민의 대표인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뛰어나며 또한 현의 의사를 현민에게 분명히 하고 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책 실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현이 조례 등 제정에 관한 방침을 갖지 않고 조례등의 제정을 계속하면, 조례, 규칙 또는 요강 등의 정합성이 없거나 동종의 정책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고 어떤 것은 요강에서 운용되는 등 균형을 잃은 법령 체계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조례, 규칙 또는 요강 등에 규정해야 하는지의 기준 및 조례 등의 제정, 운용 및 점검을 위한 기본적인 생각을 분명히 할 지침이 필요하다.

(4) 조례의 제정 및 활용방법

지방공공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처리하기로 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헌법 제94조,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현이 독자적으로 현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4조제2항).

이에 따라 일정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

- 1)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조례 내용에 대한 현민은 준수할 의무가 생기고 행정은 성실하게 운영할 의무가 생긴다. 조례는 실효성 담보 때문에 별착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 2) 현의 의사를 현민에게 분명히 표시할 수 있다. 조례는 현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기 때문에 현의 의사를 현민에게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 3) 투명성이 뛰어나다. 조례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되어 투명성이 뛰어나며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할 수 있다.
- 4) 현의 행정에 대한 현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폭넓은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5) 조례방식의 선택

1) 필요적 조례 사항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 사항을 정하는 경우 및 현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현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는 반드시 조례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조례사항

필요 조례 사항은 아니지만 현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기능이 기대될 때는 적극적으로 조례를 선택해야 한다.

(6) 요강 등의 조례화 또는 규칙화의 검토

현민의 임의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생각 아래 제정되어 있는 요강 등이라도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규제적 내용 및 현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요강 등 또는 특정 사람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주는 행정지도 제도가 정착된 것의 근거인 요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례화 또는 규칙화를 검토한다. 또한 법령이 정비 분야에서 필요한 긴급적 대응으로 제정된 요강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토할 수 있다.

- 장기간 지속된 사업에 있으면 그 필요성 및 요강 등에서 실시한 가운데의 과제 및 그 대응의 실적을 바탕으로 조례화 또는 규칙화를 검토한다.
- 요강 등에 의한 사업이 현의 계획 등의 정책 체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가 등 그 중요성을 바탕으로 조례화 또는 규칙화를 검토한다.
- 그 요강 등이 법령, 조례, 규칙 및 다른 요강 등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하고 유사한 정책이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화를 도모하는 조례화 또는 규칙화를 검토한다.

(7) 조례 검토 절차에 대한 현민참여 촉진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의 전개를 위해서 현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의 검토 과정에서 정보공개, 현민참여시스템을 도입하고, 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실시 중인 현정책 퍼블릭 코멘트 절차 외에 특히 현정책으로 섬의 관심을 환기하고 동참을 촉구해야 하는 조례 및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검토단계에서 전문가에게 검토회 등 심의하는 등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의 사례)

구마모토 현 행정 문서의 관리에 관한 조례·행정 문서 관리 방식 검토 위원회
구마모토 현 병원 및 진료소의 인력,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료 심의회

(8) 지침의 실효성 확보 방법

- 추진체제의 정비

조례 등의 제정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가 실현을 지향하는 정책에 걸맞게 제정방식으로, 조례, 규칙 또는 요강 등의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다. 법제 담당과는 검토 초기 단계에서부터 담당부서의 요청을 받아 조례 등의 검토에 참여하여 법제 업무 면에서 지원한다. 또한 법제 담당과에서는 직원의 범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의 체계적인 정비를 진행한다.

- 조례 등의 정기적인 검토 등

이미 제정된 조례 등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으로 조례 등의 제정 및 활용 방법을 바탕으로 재정리한다. 또 제정된 조례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회 정세의 변화, 법령의 개정 등을 토대로 하여 그 실시상황을 조사하고, 제정의 원인이 된 입법 사실에 변경이 아닌지, 역할이 이미 완료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에 응하여 개폐를 실시한다.

- 지침의 지속관리

이 지침에서 제시한 구체적 대응에 대해서는 법제 담당과에서 진행관리하고, 조례 등의 담당과와 연계를 도모하면서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시킨다. 또한 법제 담당과에 대해서는 필요시 이 지침 내용의 재검토를 실시한다.

2. 카나가와현 카오사키시 자치기본조례의 개요¹⁵⁾

카나가와현 카오사키시의 자치기본조례의 경우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시민자치 확립을 규정한 목적, 최고규범성, 정의, 기본이념 및 자치운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자치운영을 담당하는 주체의 역할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자치운영의 기본원칙에 기초한 제도에 대하여, 제4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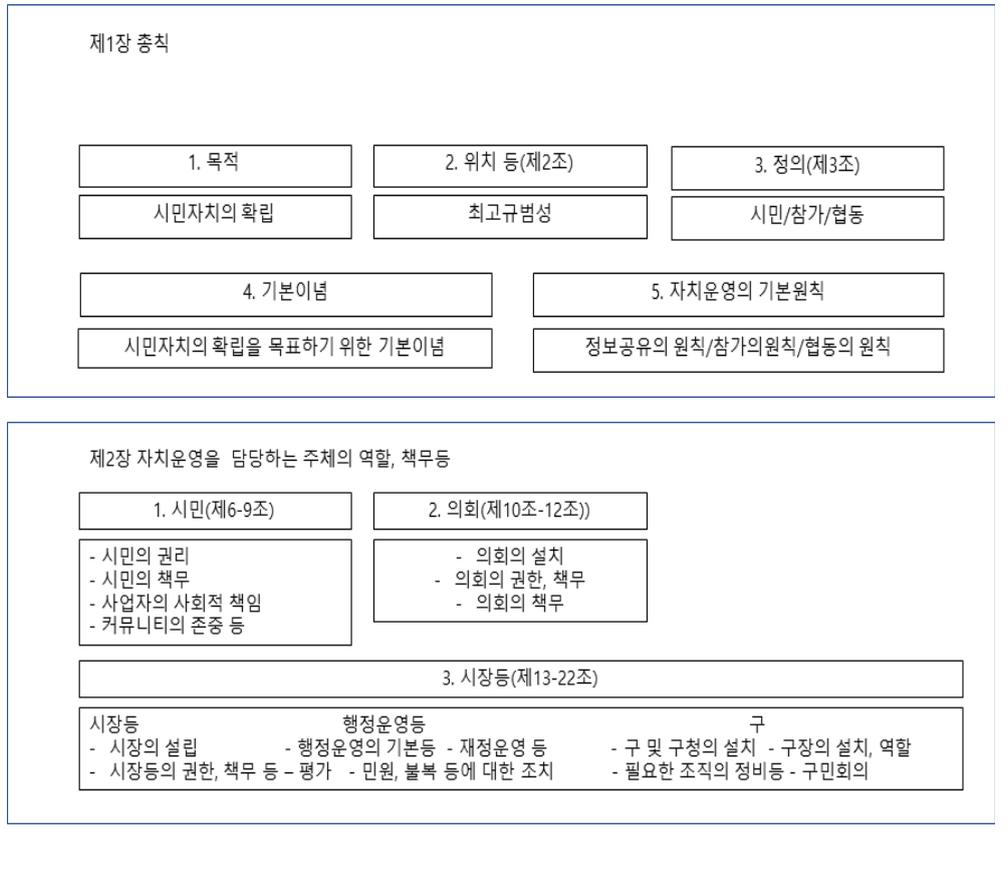
15) <http://www.city.kawasaki.jp/250/page/0000003163.html> (2017.11.1. 검색)

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치기본조례의 기본원칙으로 들고 있는 것은 ① 정보공유의 원칙, ② 참여의 원칙, ③ 협동의 원칙이다. 카나가와현 카오사키시의 경우 시민차지와 관련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 과제인식, 사회활동, 지역활동 참여상황이나 인식, NPO법인 등의 시민 활동 단체에 대한 인식, 기부 등에 의한 단체 지원, 여가·자유시간 취미 등에 관한 생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였다. 카나가와현 카오사키시의 자치기본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소개한다.

(1) 자치기본조례의 내용과 특징

카와사키시 자치기본조례는平成 17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2) 자치기본조례의 구성과 내용



<p>제3장 자치운영의 기본원칙에 기초한 제도 등</p>	
<p>1. 정보공유에 의한 자치운영(제23-2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 의회공개 - 정보공유의 방법등 정비 	<p>2. 참기 및 협동에 의한 자치운영(제28-3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참가의 기회의 정비등 - 심의회등 시민위원의 공모 - 공청회 절차 - 주민투표제도 - 협동추진의 시책정비 등
<p>3. 자치운영의 제도등의 방식에 대한 조사심의</p> <p>자치추진위원회</p>	
<p>제4장 국가와 다른 자치체와의 관계</p>	
<p>국가와 다른 자치체와의 관계</p> <p>국가와 다른 자치체와의 상호협력 등</p>	

(3) 기본원칙

1) 정보공유의 원칙
 자치를 운영하는데 또는 참여와 협동의 원칙에 의한 자치의 추진을 위해서 시민과 시가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운영에 있어 정보공유란 시가 보유하는 정보는 시민의 재산이며, 시가 그의 적절한 발신과 관리를 시민들에게 맡겨지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참여의 원칙
 시민은 시정의 각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므로 시는 참여의 원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보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은 시민의 책무규정에서 참여에 즈음해서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시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3) 협동의 원칙
 시민과 시가 협력하면서 서로의 특성을 발휘하고 과제 해결하는 것이 일반만이 과제해결에 임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협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4) 시민자치의 실태 등에 관한 조사

① 조사목적
 지역활동 등에 관하여 흥미, 의욕, 희망에 대한 개념 및 생활실태, 시민자치 의식 등에 대해서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제휴에 의한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대책 검토에 활용하고자 한다.

② 조사대상

30-49세 조사 : 카와사키 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49세 이하의 남녀 1,750인

50-74세 조사 : 카와사키 내 거주하는 50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1,400인

③ 표본추출

평성 25년 7월 31일 현재의 주민기본대장에 기초한 이단무작위 추출

④ 조사방법

우편발송우편회수법

⑤ 질문 항목

지역에 대한 관심, 과제인식, 사회활동, 지역활동 참여상황이나 인식, NPO법인 등의 시민 활동 단체에 대한 인식, 기부 등에 의한 단체 지원, 여가·자유시간 취미 등에 관한 생각 등

(5) 자치추진위원회

카와사키시 자치추진위원회는 자치의 확충추진을 모색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평성 18년에 설치된 자치기본조례의 자치운영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 제도 등의 방식에 대해 조사, 심의 위원회이다. 위원은 시민위원 3명, 학식을 가진 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타미시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지침¹⁶⁾

이타미시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지침은 “행정과제가 복잡화, 다양화하는 중에 조례 등을 적극적 혹은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시의 실상에 대응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 등의 제정이나 개정시의 방향을 밝힘으로써 직원이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조례 등을 활용한 정책 형성에 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는 정기적(5년 단위)으로 그 효과, 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평가의 시점은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적법성, 공평성, 적정성, 정책방침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 개선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타미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지침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6) 総務部法務室法制課, 伊丹市条例等の制定及び見直しに関する指針, 伊丹市議會, 2016, 1頁 이하.

이타미시에서는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행정과제가 복잡화, 다양화하는 중에 조례 등을 적극적 혹은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시의 실상에 대응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 등의 제정이나 개정시의 방향을 밝힘으로써 직원이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조례 등을 활용한 정책 형성에 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조례 제정의 기본방침

조례가 정책형성의 중요한 방법임을 바탕으로 다음에 제시하는 기준에 기초하여 적절히 제정되어야 한다.

1) 조례로 정하는 의의가 있는 것(임의적 조례사항)

다음에 제시하는 범규범¹⁷⁾으로서의 효과가 기대할 수 있고, 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 총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 (a)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것
- (b) 권리의무 규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일정한 책무를 걸거나 작위를 요구하는 것
- (c) 시정 전반과 개별 행정분야의 정책의 기본방침, 사항을 정하는 것
- (d) 시민의 권리를 부영거나 보호하되
- (e) 시정의 주민참여의 추진과 절차를 정하는 것
- (f) 법에 의한 허가 기준 등 법집행에 필요한 사항에서 중요한 것

2) 꼭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필요적 조례사항)

- (a)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b) 벌칙을 마련하는 것
- (c) 그 외 법령에 의한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것

(2) 규칙, 요강 등

정책실현과 행정운영을 적절하게 하는 조례이지만 자치입법인 규칙과 행정 내부의 사무 집행 지침인 요강을 별표에 게재한 기준에 기초하여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3) 조례 관리의 기본

조례는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그 제정 후 적절히 집행, 운용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조례가 항상 유효하고 타당한 것인 것처럼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17) 범규범 : 법적 구속력을 갖고 규칙화된 일정한 행위, 평가, 판단 등의 기준.

(4) 조례제정 시의 유의사항

- 1)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사실(입법사실)을 정확하게 고려한다.
 조례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입법사실로 뒷받침된다. 시민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입법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특히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정확한 검토를 요한다.
- 2) 정책, 제도 등의 내용은 복수의 방안을 충분히 비교검토하고 합리적·합법적으로 최선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 3) 조례의 내용에서 다음의 경우는 수정조항(검토조항)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 (a) 적절히 남긴 과제나 정세변화에 따른 조치의 필요성이 전망되는 경우
 - (b) 권리의무규제의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경우(규제의 필요성, 타당성검증)
- 4) 조례의 발의에 있어서는 제정 이유를 명확화 하기 때문에 입법사실, 과제설정, 목적설계계획, 해결방법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조례입안기획서를 작성한다(간단한 내용의 조례를 제외한다).
- 5) 신규조례나 중요하거나 복잡한 조례 개정 내용의 검토에 있어서는 조례안 요강을 작성한다.
- 6) 시의 실상을 감안한 정책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설명과 시민 참여의 기회 확보에 힘쓴다.

(5) 조례의 집행, 운용 시 유의점

- 1) 조례의 집행, 운용이 공정하게 되어 있는지, 해석 잘못이나 담당자의 불통이 없는지, 소관과에서 적절히 검토한다.
- 2) 다음에 제시하는 조례 기타의 조례로 조문만으로는 취지와 의미를 알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축조해설을 작성한다. 이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 (a) 정보 공개 등 행정통칙적인 내용의 조례에서 전칭적으로 조례를 집행,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
 - (b) 자신의 정책을 정한 조례
 - (c)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 3) 이념적, 기본조례는 이에 근거하여 개별조례의 제정 및 기타 정책의 실시에 의하며, 구체적인 운용이 따르는지 소관부서에서 확인한다.

(6) 조례의 정기적 평가

- 1) 조례는 정책으로서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그 효과, 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2) 평가의 시점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행정평가 시점과는 차이가 있다).

필요성, 타당성	입법사실이나 과제에 변화가 없는지. 현재도 조례가 필요한지.
유효성	규정내용은 목적의 실현에 효과를 주고 있는지.
효율성	규정내용은 비용대비 효과에 있어서 최고의 효율적인 방법인지.
적법성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성에 변화가 없는지. 현재 적법한 내용인지.
공평성	규정내용에 의한 효과/부담은 공평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적정성	집행/운용은 적정하게 되는지. 불합리한 절차는 없는지.
정책방침과의 정합성	정책의 기본방침과의 정합성이 있는지. 격차가 생기지 않는지.

3) 이념조례. 기본조례의 평가는 당해조례에 근거한 개별조례/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상황이나 이념/기본조례의 인식도 등에 착안해서 앞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7) 조례의 개정

상기조례의 평가 결과, 개선점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실제 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개정을 해야 한다. 집행/운용의 개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개선을 행한다.

(8) 조례의 체계화

- 1) 특정 행정분야의 정책 종합적 방향성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분야에 관련한 기본조례를 둘 수 있다.
- 2) 기본조례를 둔 경우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개별조례를 조리있게 정비한다. 조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규칙/계획 등 기본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취한다.

(9) 규칙/요강 등의 관리

조례의 관리부터 조례의 개정까지의 조례 관리에 준해서 각 소관과에 있어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10) 본지침의 개정

이 지침의 개정은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경과 후에 총무부법무실법제과에서 행한다.

4. 오슈시 자치 기본조례 규정의 이행상황에 관한 평가¹⁸⁾

오슈시 자치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 이행상황에 관한 평가 사례를 소개한다.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례 규정의 이행 상황을 평가한 실제 사례로 각 규정

18) 平成24 年度 奥州市自治基本条例規定の履行状況, <http://www.city.oshu.iwate.jp/htm/jitukihon/> (2017.11.2. 검색)

에 대하여 관련 실적을 제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조례 규정의 실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조례 규정의 지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인 평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례 규정	이행 상황
<p>제3장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기본적 사항</p> <p>제1절 정보공유 (정보공개 및 제공)</p> <p>제15조 1. 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시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다. 2. 시는 홍보지, 홈페이지 및 기타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p> <p>(개인정보의 보호)</p> <p>제16조 시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시, 정정, 이용정지등을 요구하는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p> <p>(설명책임)</p> <p>제17조 시는 시의 정책입안, 실시 및 평가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그 경과, 내용, 효과에 관하여 시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한다.</p> <p>제2절 참여 (시민참여제도)</p> <p>제18조 시는 다음 조항에서 정한 것 외에 시의 정책입안, 실시 및 평가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민참여의 제도 및 기회를 정비하도록 노력한다.</p>	<p>(정보공개 및 제공)</p> <p>오슈시 정보공개조례(2006년 오슈시 조례 제7호)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p> <p>• 2014년도 실적 > 청구: 175건, 개시: 101건, 부분개시(개인정보외의): 65건, 비개시: 9건</p> <p>(개인정보의 보호)</p> <p>오슈시 개인정보보호조례(2006년 오슈시 조례 제26호)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p> <p>• 2014년도 실적 > 청구: 37건, 개시: 35건, 부분개시: 2건, 비개시: 0건</p> <p>(설명책임)</p> <p>오슈시 시민참여조례(2009년 오슈시 조례 제36호)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p> <p>(시민참여제도)</p> <p>오슈시 시민참여조례(2009년 오슈시 조례 제36호)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p>

조례 규정	이행 상황
<p>(의견수집 절차) 제19조 시는 도시계획에 관한 계획의 책정이나 변경 또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시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을 미리 공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동시에 그 의견을 고려하도록 한다.</p> <p>(부속기관 등) 제20조 1. 시는 심의회, 심사회 및 기타 부속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곳(이하 「부속기관」이라고 한다)을 만들거나 혹은 운영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에 의한 시민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물론 그 구성원은 남녀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도록 한다.</p> <p>2. 부속기관 등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p> <p>(남녀공동참여) 제21조 시는 앞 조 제1항에서 정해진 것 외에 별도의 조례에서 결정되는 것보다 남녀공동참여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p>	<p>(의견수집 절차) 오슈시 시민참여조례(2009년 오슈시 조례 제36호)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실적 > 의견공모 절차 실시 : 7건 <p>(부속기관등) 오슈시 시민참여조례(2009년 오슈시 조례 제36호)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실적 > 심의회 등의 수 (요강포함) : 26 (55) (2015년 4월 1일 현재) 의원수 (요강포함) : 499명 (893명) (" 현재) 공개등용률 (요강포함) : 45명, 9.0% (61명, 6.8%) (" 현재) 여성등용률 (요강포함) : 133명, 26.7% (253명, 28.3%) (" 현재) <p>(남녀공동참여) 오슈시 남녀공동참여추진 조례(2007년 오슈시 조례 제2호)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남녀공동참여로 추진하는 시책의 상황을 확실하게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고 있다.</p>
<p>제3 절 협 동 (협동의 추진) 제22조 시는 공공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민, 사업자, 기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와 협동의 의의 및 목적을 공유함과 더불어 협동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p> <p>(지역커뮤니티) 제23조 1. 시민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가해서 전체적인 의견과 협력에 의해 구성된 기</p>	<p>(협동의 추진) 협동하는 도시계획의 주체가 되는 지역커뮤니티 활동, NPO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시책을 실시하고 있다.</p> <p>(지역커뮤니티) 오슈지역운영교부금 교부요강(2007년 오슈시 고시 제78호) 및 오슈시 협동의 도시계획 교부금 교부요강(2011년 오슈시 고시 제72호)에 따라,</p>

조례 규정	이행 상황
<p>초적인 모임(이하 「지역 커뮤니티」라고 한다)을 기초로 여러 지역의 과제해결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행동한다.</p> <p>2. 시는 지역커뮤니티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p> <p>(시민공익활동)</p> <p>제24조 1. 시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자발적, 자주적, 지속적으로 행하는 비영리활동(이하 「시민공익활동」이라고 한다)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p> <p>2. 시민공익활동을 행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는 협동하는 도시계획의 중요한 담당자로서의 인식을 토대로 그 활동이 폭넓게 시민들에게 이해되도록 노력한다.</p> <p>3. 시민 및 사업자는 시민공익활동의 의의를 이해하고 시민주체의 자치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협력 및 지원에 힘쓴다.</p> <p>제4장 주민투표</p> <p>(주민투표)</p> <p>제25조 1. 시장은 시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직접 주민(시내에 주소가 있는 만 18세 이상인자(상주외국인 포함)라고 함. 다음 조에서도 동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p> <p>2. 의회 및 시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한다.</p>	<p>시내 30지구의 각 진흥회에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그리고 오슈시만의 지역 특성화 살리기 사업 보조금 교부요강(2010년 오슈시 고시 제129호)에 따라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지역의 호감도 향상과 과제해결로 한창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p> <p>• 2014년도 실적 > 지역운영교부금 : 137,784천엔 협동의 도시계획교부금 : 130,878천엔 (347사업) 지역특성화 살리기 교부금 : 1,701천엔 (9사업)</p> <p>(시민공익활동)</p> <p>시민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커뮤니티 활동 및 봉사활동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과 새로이 시작하는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다.</p> <p>또, 오슈시 시민이 선택한 시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2008년 오슈시 조례 제2호)에 따라, 시민투표를 통해서 보조금액수를 결정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시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NPO활동에 대해서 알리는 기회로 보다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p> <p>• 2014년도 실적 > 인정단체 : 9단체, 투표률 : 4.40%, 보조금액 : 3,978천엔</p> <p>(주민투표)</p> <p>오슈시 주민투표조례(2009년 오슈시 조례 제2호)에 따라 상설형 주민투표제도를 만들었다.</p> <p>• 2014년도 실적 > 청구 : 0건</p>

조례 규정	이행 상황
<p>(주민투표의 실시요건)</p> <p>제26조 1. 주민은 시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의 6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고, 그 대표가 시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p> <p>2. 의회는 시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의원의 12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의원 제안이 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의결되면 시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p> <p>3. 시장은 시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p> <p>4.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p> <p>5. 앞의 각 항에서 정해진 외에 주민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시정운영</p> <p>(종합계획)</p> <p>제27조 1. 시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기본구성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본시의 자치 기본이념에 따르는 책정을 한다.</p> <p>2. 시는 종합계획의 진행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재검토를 한다.</p> <p>3. 시는 행정분야 마다의 계획 및 정책의 입안, 실시를 종합계획에 입각해서 한다.</p> <p>(행정평가)</p> <p>제28조 시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책의 성과 및 달성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정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p> <p>(재정운영)</p> <p>제29조 1. 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재정운영을 하도록 노력한다.</p>	<p>(종합계획)</p> <p>종합계획기본구상·후기기본계획(2012~2016)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기능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지역의 개성이 빛을 발하는 자치와 협력의 도시 오슈시」를 공고히 하고, 장래 세계에 자랑할 만한 오슈시의 구축을 지켜본다.</p> <p>(행정평가)</p> <p>행정평가시스템 도입 지침에 따라, 사무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고 정리해서 종합계획심의회에 보고하고, 시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p> <p>(재정운영)</p> <p>행정재개혁대강과 동실시계획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재정의 건전화를 진행하고 있다.</p>

조례 규정	이행 상황
<p>2. 시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서 종합계획 및 행정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재원 및 재산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한다.</p> <p>3. 시는 재정상황에 관한 정보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힘쓴다.</p> <p>(제안에 대한 대응) 제30조 시는 시정에 관한 의견, 요구, 고충 등의 제안이 있을 때,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한다.</p> <p>(행정절차) 제31조 시는 시민의 권리 및 이익보호에 힘쓰는 한편 시정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투명성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별도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 행하는 처분, 지도, 신고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밝히도록 한다.</p> <p>(공익통보) 제32조 시는 공익통보(제정대상행위에 대해서 직원으로부터 받는 통보를 말한다)를 받는 체계를 정비하면서, 해당 통보자가 통보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p> <p>(정책법무) 제33조 시는 시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의 자주적이고 적절한 해석 및 운용을 토대로 관계법령과의 정합성을 추구하면서, 조례, 규칙의 제정, 개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p> <p>(위기관리) 제34조 시는 시민과 사업자 및 국가, 현,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력, 연계 및 상호지원관계를 구축하고 화재 등의 긴박한 상황에 있어서 유연</p>	<p>또한, 예산, 수입지출, 시유재산, 채권 등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연2회 공표하고 있다.</p> <p>(제안에 대한 대응) 시민제안취급요령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 • 2014년도 실적 > 수리 : 15건, 회답 : 15건</p> <p>(행정절차) 오슈시행정절차조례(2006년 오슈시 조례 제13호)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p> <p>(공익통보) 오슈시 노동자에 의한 공익통보의 사무처리에 관한 요강(2008년 오슈시 고시 제160호)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 • 2014년도 실적 > 통보 : 0건</p> <p>(정책법무) 오슈시 법규심사위원회 규정(2006년 오슈시 훈령 제45호)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p> <p>(위기관리) 오슈시 지역방재계획, 오슈시 수방계획 및 오슈시 국민보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p>

조례 규정	이행 상황
<p>하고 기동적인 위기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p>	<p>• 2014년도 실적 > 소방대원충족률 : 87.5% (2015년 4월 1일 현재), 자주방재조직의 조직률 : 93.1%(2015년 4월 현재)</p>
<p>제6장 광역적인 연계 및 교류 (광역적인 연계 및 교류) 제35조 1. 시는 공통된 과제 및 광역적인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 현 및 관계 시읍면과 상호 연계해서 협력하도록 한다. 2. 각 주체는 자매도시, 기타 국내외의 지자체, 조직등과 연계해서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 지식 및 경험을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한다.</p> <p>제7장 잡 칙 (이행상황등의 검증) 제36조 시는 매년 이 조례의 시정운영에 관한 규정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검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조례의 재검토) 제37조 시는 5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마다 이 조례를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례의 개정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위임) 제3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기지 않은 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광역적인 연계 및 교류) 산학관 연계추진사업 외, 국가의 직원파견 교류가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의 자매도시와도 청소년교류와 물산교류를 통해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참고> 국내자매도시 : 나가누마정(홋카이도), 아쓰마정(홋카이도), 가케가와시(시즈오카현) 해외자매도시 : 그레이트셰파톤시(호주) 로이테시 · 브라이튼뱅크(오스트리아)</p> <p>(이행상황 등의 검증) 자치기본조례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검증하고, 시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p> <p>부 칙 오슈시 자치기본조례의 실행기한을 정하는 규칙(2009년 오슈시 규칙 제 47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p>

Ⅲ. 소 결

위에서 일본의 구마모토현, 카나가와현 카오사키시와 이타미시의 기본조례 및 조례 입안 지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오슈시의 자치 기본조례 규정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2013년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6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현하고 있음에서 심사기준표의 활용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 바에 따라 조례 입법평가지 사후 입법평가에 있어서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방안으로 심사기준표 정비시에 기준표를 활용하는 전문가가 어떠한 방법 또는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기준표상의 항목을 체크하거나 내용을 작성하였는지 부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

전문가 조사 및 분석

제1절 질문지 구성을 위한 사전 인터뷰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및 분석

제4장

전문가 조사 및 분석

제1절 질문지 구성을 위한 사전 인터뷰

I. 사전 인터뷰 배경

이 조사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방향성 확인, 연구결과의 정합성 확인 및 조례 입법평가지 활용하고 있는 심사기준표의 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례 입법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실무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면 인터뷰는 현재 조례 입법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공유, 조례 입법평가지 기준표의 활용정도, 기준표를 활용하는 경우의 업무 강도 및 조례 입법평가의 적정 주기, 분석지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위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II. 사전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문지 구성

2016년과 2017년에 실제 조례 입법평가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실무전문가와의 대면 인터뷰의 내용을 구조화된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서 이 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전문가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open형 응답을 함께 구성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질문지의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15: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p>안녕하세요?</p> <p>이번 전문가 의견 조사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와 관련된 조사입니다.</p> <p>작성해주신 의견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되며 『통계법』에 따라 보호됩니다.</p> <p>감사합니다.</p>	<p>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 연구위원 차현숙</p>
<p>□ 배경질문</p> <p>1. 조례 입안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p> <p style="margin-left: 20px;">① 예</p> <p style="margin-left: 20px;">② 아니오</p> <p>2. 현재 직에 재직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셨는지요?</p> <p style="margin-left: 20px;">① 1년 미만</p> <p style="margin-left: 20px;">② 1년 이상 ~ 3년 미만</p> <p style="margin-left: 20px;">③ 3년 이상 ~ 5년 미만</p> <p style="margin-left: 20px;">④ 5년 이상</p> <p>3. 직업을 선택해주세요.</p> <p style="margin-left: 20px;">① 지방의회 공무원</p> <p style="margin-left: 20px;">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p> <p style="margin-left: 20px;">③ 학계</p>	

- ④ 연구원
- ⑤ 법조계
- ⑥ 기타()

□ 조례 입법평가(영향분석) 관련 사항

1. 조례 입법평가 업무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① 예
- ② 아니오

2.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활용하여 조례 입법평가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① 예
- ② 아니오

2-1. 심사기준표를 활용한 조례 입법평가 업무의 강도는 어떠하였는지요?

- ①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
- ② 업무 강도가 높다
- ③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
- ④ 업무 강도가 거의 없다.

2-2. 심사기준표를 활용한 조례 입법평가의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2년
- ② 3년
- ③ 4년
- ④ 5년
- ⑤ 기타()

3.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 ① 있다.
- ② 없다.

3-1. 가장 최근에 심사기준표를 활용한 조례 입법평가의 건수는 몇 건이었는지요?

- ① 20건 미만
- ② 20건 이상 50건 미만
- ③ 50건 이상 100건 미만

④ 100건 이상

3-2. 한 번의 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조례 입법평가의 건수는 몇 건 정도 인가요?

- ① 20건 미만
- ② 20건 이상 50건 미만
- ③ 50건 이상 100건 미만
- ④ 100건 이상

4. 현재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가 조례 입법평가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1.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4-2.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4-3. 충분하지 않다면 언제 이 지표의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 향후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 ②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 ③ 조례 입법평가 지표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도록 수정
- ④ 대항목과 세부항목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수정
- ⑥ 기타(내용을 작성해주세요)

6. 사전평가 지표와 사후평가 지표를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7. 그 밖에 조례입법평가 심사기준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및 분석

I. 전문가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금번 전문가 조사는 조례 입법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조례 입법평가 전문가 및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작성에 참여하였던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실 조사대상자는 조례입법평가 실무전문가 및 입법평가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이 쉽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입법평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자 및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대상자는 4개 광역시의 조례 입법평가 관련 전문가 14명이다. 이 중에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위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조사기간은 약 10일간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일부 문항의 경우에는 open형(개방형)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조화하였다.

조사설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6: 전문가 조사 설계 개요>

조사대상	조례 입안 지원 업무 담당자(조례 입법평가 유 경험자 및 관련 지원 업무 담당자)
표본크기	14명

조사방법	E-mail, 전화 및 대면조사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open형 응답포함

2. 응답자 구성

- 전체 응답자는 모두 조례 입법평가 관련 직접·간접적인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이며, 전체 응답자 14명 중 9명은 현재 직에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5명은 1-3년 미만 재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3. 조사 내용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질문지는 조례 입법평가 업무 관련 경험, 한 번의 위원회 개최시 정적인 조례 입법평가 처리 건 수, 심사기준표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의견으로 구성하였다.

조례 입법평가 업무 관련 경험 등	조례 입법평가 업무 참여 경험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활용 입법평가 업무 경험 심사기준표 활용 조례 입법평가 업무 강도 심사기준표 활용 조례 입법평가의 적정 주기
적정 입법평가 처리 건 수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별도 조직 운영 여부 위원회 시 처리한 심사기준표 활용 조례 입법평가 건수 1회 위원회 시 적정 조례 입법평가 처리 건수
현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평가	현 소속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충분성 현 기준표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현 기준표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 바람직한 기준표 수정 시기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바람직한 수정방안

개선 의견

사전/사후 평가기준표 분리 운영 방안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관련 의견

이상의 질문지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기반으로 심사기준표 정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분석

1. 조례 입법평가 업무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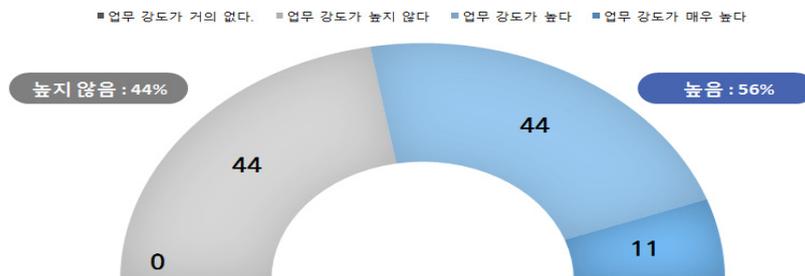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14명 중 9명은 조례 입법평가 업무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참여 경험자 전체는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활용하여 조례 입법평가 업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5명은 조례 입법평가 업무에 필요한 업무지원의 경험자이다.

(1) 심사기준표 활용 조례 입법평가의 업무 강도

-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활용하여 조례 입법평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경험자 9명 중 5명 (56%)은 해당 업무의 강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 심사기준표 활용한 조례 입법평가의 업무 강도

[Base: 심사기준표 활용 조례 입법평가 업무 경험자(N=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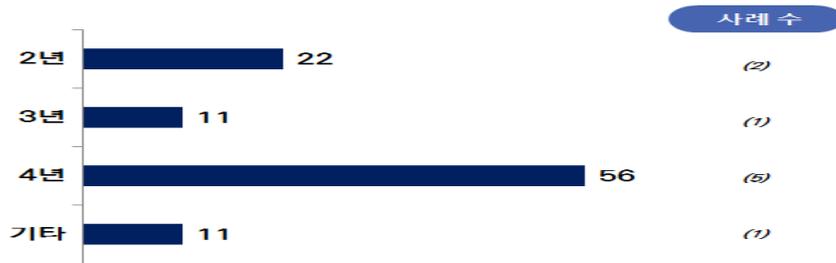


(2) 심사기준표 활용한 조례 입법평가의 적정 주기

- 심사기준표 활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표를 활용한 조례 입법평가의 적당한 주기를 질문한 결과, 5명은 4년 주기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심사기준표 활용한 조례 입법평가의 적정 주기

[Base: 심사기준표 활용 조례 입법평가 업무 경험자(N=9), 단위: %, 명]



2. 조례 입법평가 관련 별도 조직 운영 여부

- 전체 응답자 14명 중 14명 전부가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 위원회 처리 조례 입법평가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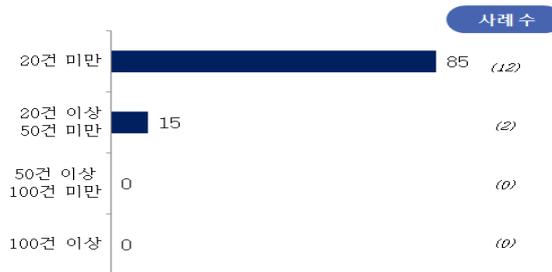
- 조사 대상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14명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심사기준표를 활용한 조례 입법평가의 건수를 조사한 결과, 6명은 100건 이상을 처리하였고, 20건 이상 50건 미만이라고 응답한 수가 2명이었으며, 20건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6명이었다.

- 한 번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몇 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 입법평가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물은 결과, 응답자 중 12명은 한 번의 위원회 시 20건 미만의 조례 입법평가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 1회 위원회 개최시 적정한 처리 조례 입법평가 건수

[Base: 조례 입법평가 위한 별도 조직 운영자(N=14), 단위: 명]

1회 위원회 적정 처리 건수



- 보통 조례 입법평가 위원회에서는 조례 입법평가서를 대상으로 하여 심의를 하게 되는데, 통상 1회에 살펴보기에 적절한 조례 입법평가의 건수를 전문가들은 20건 미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3. 현재 사용하는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대한 평가

- 현재 조사대상자가 소속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에 대하여 물었다. 본 조사의 응답자 전원은 현재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가 조례 입법평가 및 조례 입법평가 보고서 작성에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 현재의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물었다.

(1) 현재의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 ❑ 현재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응답 전문가들은 척도 문항의 형태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기술 및 반영이 어렵다는 점, 평가 자체에 주관이 개입된다는 점, 평가 결과의 기속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답하였다.
- ❑ 개방형 응답의 세부적인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p>구체적인 개선점 반영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보다는 사후심사기준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5가지 척도가 있는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차이점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로 하기보다는 그렇다. 그러지 않다. 기타 의견에 대한 지표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전분석 척도가 단순히 그렇다/그렇지 않다 양자 택일형태여서 분석항목별 입법 영향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 경기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는 사전에 예/아니오로 표시만 하게 되어 있고, 사후에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표시만 하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개선점이 기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예, 아니오 라는 답변을 하기에 적합한 질문이 아닌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복잡한 경우가 많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p>주민들의 이해관계 등 현실적 반영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입법평가 시 주요 심사기준표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하나, 조례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비용추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조례 시행에 따른 예·결산 정보 부족으로 입법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입법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기준표는 1차(사전) 평가적 성격이 강하고, 조례입법평가에 있어 모든 조례에 포괄 가능한 일반화된 기준에 따른 평가여서 조례별 혹은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정성적 평가에 대한 반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는 해당 조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조례에 대한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인식이나 평가가 중요하지만 이를 심사기준표에 반영하는데 어려워 심사기준표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함
<p>객관적인 용어로의 전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되는 도민과의 관계에서 평가, 이해도 등에 대한 피드백이 어렵고 주관성이 개입되는(지역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 긍정(!)적인가 등)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세부 항목 중 객관적이지 않은 용어(많이, 충분히 등)가 포함되어 있어 평가자별 판단이 상이할 수 있다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으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음 ❖ 평가지표를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사전평가 지표는 매우 표면적이고 실제 조례가 미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님. 아울러 사전 사후평가를 통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의 강제성이 부족함에 따라 무용지물한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2) 심사기준표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

- ❑ 현재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대한 수정의견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응답, 객관화, 자료 제출 의무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조례 입법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및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 ❑ 응답자의 보다 세부적인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p>세분화/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도별 응답 내용을 세분화할 것 - 점수방식 등 ❖ 입법평가 심사기준표가 이에 어긋나게 되면 체크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특성에 따른 세분화 필요. 예컨대 예산이 고려되어야 하는 조례와 예산 고려 없이 논리적 타당성만 필요한 조례가 있음. 책무조례와 의무조례가 다를 수 있음. 각 특성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조례, 대민조사가 필요한 조례, 공무원 심층의견이 필요한 조례 등 세분화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변의 가지 수를 좀 더 늘리고 조례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주관식 답변도 필요함 ❖ 답변에 해당없음이라는 보기와 질문마다 주관식 칸을 만들어 실무자가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사후 지표의 수정인데 즉 몇 개의 사례를 들어보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민원 사항이 제기된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 하면 1번 민원 제기된 적이 있다. 2번 민원 제기된 적이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2번째 사례로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1번 유지할 필요가 있다. 2번 유지할 필요가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3번째 사례로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구가 있었는가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3번 잘 모르겠다 등등 사후 지표의 5가지 척도가 질문에 대해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지표나 사후지표가 설문조사를 하여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표별로 척도가 다르더라도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객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유지의 필요성, 효율성, 현실의 부합성 등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많아, 이를 객관화할 세부지표의 개발 필요 ❖ 조례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되는 도민과의 관계에서 평가, 이해도 등에 대한 피드백이 어렵고 주관성이 개입되는(지역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나,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 긍정(!)적인가 등)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세부항목 내용을 객관화해서 평가자가 달라지더라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p style="text-align: center;">자료제출 관련 강제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집행의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집행력을 확신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도 보완하면 좋겠음 ❖ 사전 지표는 입법이 주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함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사후평가는 강제성을 통해 수정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함 ❖ 입법평가시 예·결산 정보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 인력/ 비용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추계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강과 조례 입법평가 시 조례 시행에 따른 예·결산 정보 확인용이성 등을 추가 ❖ 대부분 조례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민과 조례에 따른 이해관계인들의 관련 조례에 대한 인식과 평가 부분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조례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조사하는데 별도의 시간과 비용 및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음

(3) 바람직한 심사기준표 수정의 시기

- 조례 입법평가지 활용하는 심사기준표는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기준표의 수정·정비의 시기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시기가 언제 인지 물었다. 심사기준표 수정의 바람직한 시기로는 가능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입법평가 2-3개월, 6개월 이전에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심사기준표의 정비·수정 이전에 전문가 협의 등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친 이후 심사기준표의 정비·수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세부적인 전문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가능한 빠르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지표의 세부적 내용이 일부 수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지표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더 필요함 ❖ 경기도의회외의 경우 입법영향 분석을 2017년 실시 하였는데 사전 사후 지표가 조례 제·개정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의원, 집행부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여 이들에게 본 평가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후 가능한 빠르게 지표 수정을 실행해야함
입법평가 6개월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평가 2~개월 이전 ❖ 입법평가 3개월 이전 ❖ 입법평가 6개월 이전
전문가 협의 등 검토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 제출 현황 및 전문 평가 인력을 확보하여 시행해 본 후, 비용 추계에 따른 입법지표 개발 및 시행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현재 지표의 수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임 ❖ 입법평가 위원회의 입법평가활동 과정에서 의견수렴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조례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지표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 한 후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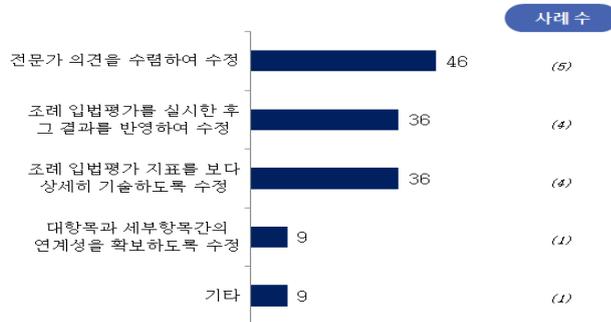
4.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바람직한 수정 방안

- 향후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수정방안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조례 입법평가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조례 입법평가 지표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고, 응답자들은 대항목과 세부 항목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를 다소 낮게 평가하였다.
- 심사기준표의 수정에 앞서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해야 한다는 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할 것이다.

[그림 4]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바람직한 수정 방안

[Base: 응답자(N=14), 단위: %, 복수응답]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바람직한 수정방안



5. 사전/사후 평가 심사기준표 분리 운영 방안

- 응답자들은 사전평가 심사기준표와 사후평가 심사기준표를 나누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두 지표가 중복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

기도 하였다. 현재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한 곳 뿐이다.

<p>사전/사후 분리 운영은 바람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제도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으나 향후 사후평가를 통해 사전평가 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새로운 지표 개발과 연계해 나간다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완성도 있는 조례를 입안할 수 있도록 사전평가 지표의 제시(위원회 심사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사전평가/사후평가는 서로 피드백 되어야 하기에 ❖ 사전과 사후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조례의 제정 전과 후 입법자의 태도가 다르고 조례제정 후에는 조례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어떤 면에서는 사전 사후가 연결되어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 사후 지표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지표를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특성에 맞다고 생각. 중복되는 부분은 발생할 것임
<p>추가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및 사후평가지표를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입법평가 취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사전평가의 경우 조례입안에 따른 필요성, 적법성,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해당조례의 심사를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사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해 조례심사시 검토가 가능하여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음 ❖ 사전평가의 경우 사실상 입법하려는 쪽에서는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나누어 운영은 바람직하나 사전평가가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면서도 평가의 의미를 가지게끔 해야 할 것 ❖ 사전평가는 최소한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입법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후평가는 조례의 실효성, 위법성을 비롯하여 도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평가하여 개정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전평가 지표와 사후평가 지표를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조례의 적법성, 법체계성, 실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입법평가(또는 지표활용)가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 조례를 입안할 때 사전입법평가 부분도 있었으나 일부 도의원들이 사전입법평가는 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여 사전입법평가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안을 가결한 사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그러나 사전평가의 실제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임. 아울러 사전지표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사전지표 내용 중 대부분이 조례 입안 전에 당연히 거치는 내용으로 사전지표가 실질적인 입법영향분석의 지표로서 기능하는지 의문. 입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집중하고 전문가들로부터의 정성적 평가에 충실함이 필요함
--	--

6. 조례입법평가 심사기준표 관련 기타 의견

- ❑ 조례입법평가 심사기준표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지표를 현실성 있게 수정’, ‘입법평가의 필요성 홍보’, ‘분석 지표의 세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지표를 현실성 있게 수정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평가 지표들이 지자체의 조직(법제팀, 입법정책담당관실, 상임위)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입법 절차에 대한 확인만을 다루고 있어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됨.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한 실질적 지표 마련이 필요 ❖ 실무자, 전문가 등 간담회를 통해 지표를 현실성 있게 수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문가(위원회)에 의한 입법평가 이외에 조례 수혜자(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도 반영필요
<p>입법평가 필요성 홍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의원들에 대해 입법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있어야 할 것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입법지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입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널리 퍼트리는 게 더 중요해 보임 ❖ 지표도 중요하지만 입법평가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거부감이 없이 받아드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의원이 입법평가 자체가 입법발의 제한으로 생각할 경우 아무리 좋은 지표라도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p>분석 지표의 세분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유형별(위원회 구성, 보조금 조례, 지원 조례 등)로 입법평가 심사기준표가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바, 조례 유형별로 조례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조례입법평가 심사기준표는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례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입법평가에 반영할 수 없어 심사기준표가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법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위임조례, 자치조례로 대분류하고, 다시 이를 각 특징별로 중분류한 후 이에 맞는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평가는 현재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이기에, 평가 실행 그리고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스템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높음 ❖ 한국법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에서 입법평가지표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여 주면 좋을 듯함 ❖ 질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임. 우선 분석해야 할 조례의 양이 너무 많으며 위임조례의 경우 평가를 통하여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음. 조문 한 두 개 만으로 영향력을 평가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인식하여야 함. 조례 제정에 참여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연구자를 찾기 어려운 점도 한계점임

III.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조사 결과 응답대상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조례 입법평가지 활용하고 있는 심사기준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조례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다르고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되고 정치한 심사기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인한다.

또한 한 번에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조례의 수가 20건 이상이 되면 심사기준표상의 내용을 체크하는데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응답하였다.

조례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입법평가위원회는 상설조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예를 들어 분기별 1회) 이로 인하여 1회 운영회 개최시 처리할 수 있는 입법평가의 건수는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사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검토한다고 할지라도 위원회 개최 당일에 살펴야 하는 대상 조례의 수가 적정하지 못하면 위원회도 줄속에 그칠 수밖에 없다. 향후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정비와 더불어 조례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조례 입법평가

● 심사기준표 정비방안

제5장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

I. 연구 요약

이 연구는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의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에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4곳의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대상으로 1차적인 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2013년도에 수행한 조례 입법평가 관련 선행연구 이후 일본의 조례 평가에 관한 변화 및 실제 조례 평가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례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의 정비에 필요한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확인하고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¹⁹⁾을 통하여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의 필요성은 조례 입법평가 실무를 담당하였던 실무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조례 입법평가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중첩되는 사항들과 상호 모순적인 항목들을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아래의 심사기준표 정비안을 제시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업을 통하여 향후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과정에서의 논의를 계속하였다.

II.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안(사후적 입법평가)

이상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안은 다음과 같다. 대항목과 세부항목을 나누고, 그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척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1차적인 체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문제점과 의견을 첨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심사기준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조례 입법평가가 활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현 시점까지 지적된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대한 문제인식을 반영하고 일본의 최신 현황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정비안이라는 점에서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 및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안은 모두 8개의 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세부항목을 두도록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척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란을 마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정비하였다. “의견 및 자료”란을 통하여 각 세부항목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거나 관련된 부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첨부를 통하여 조례 입법평가가 보다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는 ①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② 조례의 실효성, ③ 조례의 공평성, ④ 주민 수용성, ⑤ 조례 내용의 적정성, ⑥ 지방자치단체 현실 부합성, ⑦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⑧ 종합의견의 8개 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에서는 조례의 성격과 위임근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례의 실효성 항목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충돌 및 모순 여부, 통합 필요성,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 여부, 집행기관의 책무 및 책무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의 공평성 항목에서는 조례의 차별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수용성 항목에서는 입법예고,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 내용의 적정성 항목에서는 조례상의 재정지원 규정 여부, 조례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나 규모의 적정성, 예산확보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적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심사기준표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에서 제시한다.

<표17: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안>

대항목	세부항목	척 도	의견 및 자료 ²⁰⁾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0) “의견 및 자료”란은 각 세부항목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입법평가가 보다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평가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었다.

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2. 조례의 실효성	1)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이 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계획 수립 사항 관련 자료 첨부
	4)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집행실적 관련 자료 첨부
3. 조례의 공평성	1)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	1)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공청회, 세미나 등 의견수렴 사항 관련 자료 첨부
	3)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	1)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예산 및 집행 관련 자료 첨부
	4)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지방자치 단체현실 부합성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의 성별 구성 관련 자료 첨부
	4)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회의 운영실적 자료 첨부

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5)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	1)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2)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3)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4)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자유롭게 의견 제시)

이상으로 제시한 연구결과가 향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표 정비에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위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심사기준표의 내용상 일부의 항목은 심사기준표를 활용하여 조례 입법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과 주관적 판단에 기대고 있어 조례 입법평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례 입법평가가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은 상태라는 점, 그리고 자치입법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입법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이 한번 더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의 활용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숙의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자치입법을 만들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에 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사후적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방안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관련 개정안 마련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심사기준표 정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차현숙·최혜선,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도입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10

차현숙·윤계형·최유·배건이·백옥선,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한국법제연
구원, 20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자치입법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카와사키현 홈페이지 <http://www.city.kawasaki.jp/250/page/0000003163.html>

NPO법인 공공정책연구소 <http://koukyou-seisaku.com/policy3.html>

熊本県における条例等の制定指針, http://www.pref.kumamoto.jp/kiji_4910.html

総務部法務室法制課, 伊丹市条例等の制定及び見直しに関する指針, 伊丹市議會, 2016

奥州市自治基本条例規定の履行状況, <http://www.city.oshu.iwate.jp/hm/jitikihon>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자료

- 일본 자치기본조례 일람

참고자료

일본 자치기본조례 일람(기준 :平成29년11월7일)¹⁾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1	ニセコ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3年4月1日
2	宝塚市	兵庫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4年4月1日
3	北海道	北海道	行政基本条例	平成14年10月18日
4	会津坂下町	福島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5年4月1日
5	鳩山町	埼玉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5年4月1日
6	清瀬市	東京都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5年4月1日
7	甲良町	滋賀県	まちづくり条例	平成15年4月1日
8	羽咋市	石川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5年4月1日
9	杉並区	東京都	自治基本条例	平成15年5月1日
10	柏崎市	新潟県	市民参加の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5年10月1日
11	伊丹市	兵庫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5年10月1日
12	東海市	愛知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5年12月22日
13	白鷹町	山形県	協働のまちづくり条例	平成16年4月1日
14	富士見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6年4月1日
15	聖籠町	新潟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6年4月1日
16	川西町	山形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6年6月23日
17	五戸町	青森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6年7月1日

1) 이 자료는 2017년 11월 현재 일본의 자치기본조례 운영현황에 관한 것이다. 향후 조례 입법평가 관련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http://koukyou-seisaku.com/policy3.html> 2017. 11. 10 검색)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18	多摩市	東京都	自治基本条例	平成16年8月1日
19	関川村	新潟県	むらづくり基本条例	平成16年8月1日
20	愛川町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6年9月1日
21	草加市	埼玉県	みんなでまちづくり自治基本条例	平成16年10月1日
22	神石高原町	広島県	人と自然が輝くまちづくり条例	平成16年11月5日
23	伊賀市	三重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6年12月24日
24	九重町	大分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7年2月1日
25	新見市	岡山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7年3月31日
26	奈井江町	北海道	まちづくり自治基本条例	平成17年4月1日
27	文京区	東京都	「文の京」自治基本条例	平成17年4月1日
28	中野区	東京都	自治基本条例	平成17年4月1日
29	足立区	東京都	自治基本条例	平成17年4月1日
30	川崎市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7年4月1日
31	大和市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7年4月1日
32	静岡市	静岡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7年4月1日
33	知立市	愛知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7年4月1日
34	矢掛町	岡山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7年4月1日
35	八戸市	青森県	協働の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7年4月1日
36	さぬき市	香川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7年4月1日
37	秩父市	埼玉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7年5月24日
38	岸和田市	大阪府	自治基本条例	平成17年8月1日
39	四日市市	三重県	市民自治基本条例 (理念条例)	平成17年9月1日
40	苫前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7年10月1日
41	三春町	福島県	町民自治基本条例	平成17年10月1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42	越前市	福井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7年10月1日
43	豊田市	愛知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7年10月1日
44	善通寺市	香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7年10月1日
45	二本松市	福島県	市政運営基本条例	平成17年12月1日
46	登別市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7年12月21日
47	矢祭町	福島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8年1月1日
48	名張市	三重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8年1月1日
49	木曾町	長野県	まちづくり条例	平成18年1月26日
50	瀬戸内市	岡山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8年2月13日
51	隠岐の島町	島根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8年3月27日
52	清水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8年4月1日
53	沼田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8年4月1日
54	遠別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18年4月1日
55	長井市	山形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8年4月1日
56	金山町	山形県	自律の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8年4月1日
57	三島町	福島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8年4月1日
58	芳賀町	栃木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8年4月1日
59	太田市	群馬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8年4月1日
60	豊島区	東京都	自治の推進に関する基本条例	平成18年4月1日
61	三鷹市	東京都	自治基本条例	平成18年4月1日
62	池田市	大阪府	みんなでつくるまちの基本条例	平成18年4月1日
63	大東市	大阪府	自治基本条例	平成18年4月1日
64	三次市	広島県	まち・ゆめ基本条例	平成18年4月1日
65	米原市	滋賀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8年9月1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66	音更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8年10月1日
67	平塚市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8年10月1日
68	篠山市	兵庫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8年10月1日
69	丸亀市	香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8年10月1日
70	新座市	埼玉県	自治憲章条例	平成18年11月1日
71	白老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1月1日
72	多治見市	岐阜県	市政基本条例	平成19年1月1日
73	吹田市	大阪府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1月1日
74	芽室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3月5日
75	下川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76	札幌市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77	苫小牧市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78	留萌市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79	帯広市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80	稚内市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81	中札内村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82	遠軽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83	大玉村	福島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84	玉村町	群馬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85	妙高市	新潟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86	湯河原町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87	飯田市	長野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88	千曲市	長野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89	岐阜市	岐阜県	住民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90	豊中市	大阪府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91	柏原市	大阪府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92	北栄町	鳥取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93	邑南町	島根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94	久万高原町	愛媛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95	寒川町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96	階上町	青森県	協働のまちづくり条例	平成19年4月1日
97	うきは市	福岡県	協働の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4月1日
98	朝日町	三重県	まちづくり条例	平成19年4月1日
99	甲府市	山梨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6月21日
100	四国中央市	愛媛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7月1日
101	佐井村	青森県	むら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7月1日
102	軽井沢町	長野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8月1日
103	美唄市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9月1日
104	遊佐町	山形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9月1日
105	七飯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10月1日
106	熊谷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10月1日
107	美里町	埼玉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10月1日
108	日進市	愛知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10月1日
109	海老名市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19年10月1日
110	野洲市	滋賀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19年10月1日
111	新潟市	新潟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2月22日
112	平取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13	上川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114	石狩市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15	花巻市	岩手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16	南相馬市	福島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17	西会津町	福島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18	小美玉市	茨城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19	日光市	栃木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20	みなかみ町	群馬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21	宮代町	埼玉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22	開成町	神奈川県	あじさいのまち開成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23	上越市	新潟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24	輪島市	石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25	京丹後市	京都府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26	寝屋川市	大阪府	みんなのまち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27	亘理町	宮城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28	愛南町	愛媛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4月1日
129	高根沢町	栃木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6月10日
130	宮古市	岩手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7月1日
131	駒ヶ根市	長野県	協働のまちづくり条例	平成20年7月1日
132	志摩市	三重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8月1日
133	大津町	熊本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9月24日
134	芦別市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10月1日
135	みよし市	愛知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10月1日
136	鳥取市	鳥取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10月1日
137	笠岡市	岡山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10月1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138	薩摩川内市	鹿児島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0年10月12日
139	雲南市	島根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11月1日
140	福津市	福岡県	みんなですすめる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0年12月1日
141	あわら市	福井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1年3月1日
142	神奈川県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3月27日
143	上富良野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44	幌延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45	士幌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46	おいらせ町	青森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47	宇都宮市	栃木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48	川口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49	国分寺市	東京都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50	箱根町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51	都留市	山梨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52	日吉津村	鳥取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53	洋野町	岩手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54	福島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55	厚沢部町	北海道	素敵な過疎の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56	三笠市	北海道	未来づくり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57	東松島市	宮城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58	流山市	千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59	大井町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160	朝来市	兵庫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4月1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161	にかほ市	秋田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6月25日
162	江別市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7月1日
163	阪南市	大阪府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7月1日
164	養父市	兵庫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1年7月1日
165	越谷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9月1日
166	由布市	大分県	住民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9月25日
167	奥州市	岩手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10月1日
168	古河市	茨城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10月1日
169	三郷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10月1日
170	小平市	東京都	自治基本条例	平成21年12月22日
171	伊予市	愛媛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1月1日
172	高松市	香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2月15日
173	那珂市	茨城県	協働のまちづくり推進基本条例	平成22年3月25日
174	綾瀬市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3月25日
175	名寄市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76	八雲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77	鹿追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78	和寒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79	柴田町	宮城県	住民自治による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80	ひたちなか市	茨城県	自立と協働の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81	春日部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82	羽生市	埼玉県	まちづくり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83	北本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84	茅ヶ崎市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185	小諸市	長野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86	輪之内町	岐阜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87	安城市	愛知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88	大口町	愛知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89	亀山市	三重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90	生駒市	奈良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91	大坂狭山市	大阪府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92	明石市	兵庫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93	防府市	山口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94	熊本市	熊本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95	合志市	熊本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96	えびの市	宮崎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97	出水市	鹿児島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98	石垣市	沖縄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199	置戸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200	備前市	岡山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201	魚沼市	新潟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2年4月1日
202	黒松内町	北海道	みんなで歩むまちづくり条例	平成22年5月7日
203	南足柄市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10月1日
204	北九州市	福岡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10月1日
205	北見市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2年12月21日
206	厚木市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12月24日
207	嘉麻市	福岡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2年12月28日
208	一宮市	愛知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1月1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209	練馬区	東京都	区政推進基本条例	平成23年1月1日
210	新十津川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3年1月1日
211	須崎市	高知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1月1日
212	中頓別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3月22日
213	新宿区	東京都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14	函館市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15	美幌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16	別海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17	垂井町	岐阜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18	高浜市	愛知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19	江南市	愛知県	市民自治による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20	島本町	大阪府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21	基山町	佐賀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22	燕市	新潟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23	上田市	長野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24	長浜市	滋賀県	市民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25	白山市	石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26	湯沢町	新潟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27	上松町	長野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28	刈谷市	愛知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29	宍粟市	兵庫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30	四万十町	高知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31	宮若市	福岡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4月1日
232	筑紫野市	福岡県	市民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6月29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233	八潮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7月1日
234	所沢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7月1日
235	大磯町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9月1日
236	和泉市	大阪府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9月1日
237	魚津市	富山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9月21日
238	牧之原市	静岡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10月1日
239	白岡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10月1日
240	阿賀野市	新潟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3年10月1日
241	鳴門市	徳島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3年11月1日
242	矢板市	栃木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3年11月1日
243	西和賀町	岩手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1月1日
244	山陽小野田市	山口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1月1日
245	小田原市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1月1日
246	大和郡山市	奈良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47	中標津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48	士別市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49	久喜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50	大分市	大分県	まちづくり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51	坂井市	福井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52	瑞穂市	岐阜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53	近江八幡市	滋賀県	協働の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54	草津市	滋賀県	自治体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55	庄原市	広島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56	加賀市	石川県	市民主役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257	丹波市	兵庫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58	登米市	宮城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59	鹿沼市	栃木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60	西原町	沖縄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4月1日
261	大空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6月21日
262	米子市	鳥取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6月27日
263	川根本町	静岡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7月1日
264	三田市	兵庫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7月1日
265	庄内町	山形県	みんなが主役の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7月1日
266	南砺市	富山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7月1日
267	七尾市	石川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9月1日
268	泉南市	大阪府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10月1日
269	東海村	茨城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10月1日
270	栃木市	栃木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10月1日
271	豊後大野市	大分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10月1日
272	三好市	徳島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10月1日
273	相生市	兵庫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10月1日
274	鴻巣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4年10月1日
275	鈴鹿市	三重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4年12月1日
276	潟上市	秋田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1月1日
277	北上市	岩手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1月1日
278	八頭町	鳥取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1月1日
279	新ひだか町	北海道	まちづくり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1月7日
280	斜里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281	栗山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82	十和田市	青森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83	掛川市	静岡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84	新城市	愛知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85	糸島市	福岡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86	西脇市	兵庫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87	調布市	東京都	自治の理念と市政運営に関する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88	山北町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89	富士河口湖町	山梨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90	碧南市	愛知県	協働のまちづくりに関する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91	岩倉市	愛知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92	佐用町	兵庫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93	むかわ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94	臼杵市	大分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5年4月1日
295	三股町	宮崎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5年6月28日
296	杵築市	大分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7月1日
297	愛荘町	滋賀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7月1日
298	福崎町	兵庫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7月1日
299	横手市	秋田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5年10月1日
300	甲斐市	山梨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5年10月1日
301	姫路市	兵庫県	まちづくりと自治の条例	平成25年12月20日
302	東郷町	愛知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1月1日
303	南風原町	沖縄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6年1월1日
304	門真市	大阪府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1월1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305	恵庭市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6年1月1日
306	郡上市	岐阜県	住民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3月27日
307	湧別町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08	小樽市	北海道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09	旭川市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10	佐賀市	佐賀県	まちづくり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11	日田市	大分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12	中井町	神奈川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13	白河市	福島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14	大田原市	栃木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15	真岡市	栃木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16	下野市	栃木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17	益子町	栃木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18	上牧町	奈良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19	滝沢市	岩手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20	東村山市	東京都	みんなで進める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21	読谷村	沖縄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22	河南町	大阪府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23	いちき串木野市	鹿児島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4月1日
324	ふじみ野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6月26日
325	戸田市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7月1日
326	箕輪町	長野県	協働の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6年7月1日
327	焼津市	静岡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10月1日
328	関市	岐阜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6年12月25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329	安平町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6年12月26日
330	安八町	岐阜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7年3月12日
331	十日町市	新潟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7年4月1日
332	桂川町	福岡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7年4月1日
333	岩見沢市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7年4月1日
334	弘前市	青森県	協働による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7年4月1日
335	愛西市	愛知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7年4월1日
336	小牧市	愛知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7年4월1日
337	清川村	神奈川县	自治基本条例	平成27年4월1日
338	真鶴町	神奈川县	自治基本条例	平成27年4월1日
339	野々市市	石川县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7年4월1日
340	高森町	長野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7年4월1日
341	吉野町	奈良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7年4월1日
342	阪南町	島根県	次世代につながる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7年4월1日
343	宇佐市	大分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7年4월1日
344	瑞浪市	岐阜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7年7월1日
345	杉戸町	埼玉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7年7월1日
346	龍ヶ崎市	茨城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7年9월1日
347	釧路市	北海道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7年10월1日
348	長崎市	長崎県	よか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7年12월1日
349	西川町	山形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8年1월1日
350	山県市	岐阜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8年3월18日
351	茂原市	千葉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8年4월1日
352	小山町	静岡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8年4월1日

	自治体名	都道府県	条例名	施行日
353	青森市	青森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8年4月1日
354	加美町	宮城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8年4月1日
355	羽島市	岐阜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8年4月1日
356	甲賀市	滋賀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8年4月1日
357	土佐清水市	高知県	みんなでまちづくり条例	平成28年4月1日
358	大牟田市	福岡県	協働のまちづくり推進条例	平成28年4月1日
359	会津若松市	福島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8年6月29日
360	大仙市	秋田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8年10月1日
361	玉名市	熊本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8年10月1日
362	尼崎市	兵庫県	自治のまちづくり条例	平成28年10月8日
363	北広島町	広島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9年2月10日
364	安曇野市	長野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9年4月1日
365	上野原市	山梨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9年4月1日
366	太宰府市	福岡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9年4月1日
367	古賀市	福岡県	まちづくり基本条例	平成29年4月1日
368	喜多方市	福島県	自治基本条例	平成29年6月16日
369	福知山市	京都府	自治基本条例	平成30年4月1日

입법평가 연구 17-15-⑤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II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

2017년 11월 13일 印刷

2017년 11월 15일 發行

發行人 이 익 현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 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값 7,000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800-3 9336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